

# 제331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폐회중)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4월1일(수)

장 소 제5회의장(220호)

### 의사일정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현안보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심사된 안건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2. 현안보고 ..... 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 김병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석 지난번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견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때 상견례 인사를 나누지 못한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차례로 듣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나다순입니다.

김기식 위원님, 오늘 상견을 겸해서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김기식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기식입니다.

우리 정치개혁, 정치관계법 개혁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것이 2004년도 정치관계법 개정이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서 범국민 정치개혁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정치개혁 과

정에 참여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신분이 바뀌어서 정계특위 위원으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온 정치개혁의 호기를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어서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박대동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동 위원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울산 북구 출신 박대동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잘 존중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와 국민의 여론을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수렴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박영선 위원님께서 상견 인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 구로구에 지역구를 둔 박영선입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제도가 그것

을 어떻게 잘 보듬어 주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선진국 사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번 정치개혁특위가 선거제도 또 정당제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를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특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박범계 위원님께서 상견 인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새정치연합의 대전 서구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범계 위원입니다.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모태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선거제도 개혁 또 선거구 획정 또 정치개혁의 과제들을 헌법조화적으로 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꿈수를 부리지 말고 대의명분에 적합하게 정도를 가는 정치개혁특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백재현 위원님께서 상견 인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 광명갑의 백재현 위원입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2004년도 정계특위를 함께 좀 고민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이번에 현재 판결에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으로 지역구 위치에 손을 많이 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정계특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의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획기적으로 모든 것을 좀 고쳐 내고 제도를 크게 보완하지 않는다면 이런 기회가 다시는 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더 획기적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지금까지 죽 총선에 의해서 나왔던 결과를 되돌아보면서 좀더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선거법의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정계특위 소속 위원님들의 상견 인사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우리 특별위원회 소속 소위원회의 구성과 선거제도 및 선거문화 개선 등과 관련된 정치관계법의 개정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안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먼저 소위 구성을 한 후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안보고를 듣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5분)

○위원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별위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12명으로 하고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각 교섭단체별 소위원 선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현안보고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시17분)

○위원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2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본격적으로 정치관계법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2월 25일 수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과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오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치관계법 심의를 위해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개정 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마련함에 있어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선거의 구현이라는 원칙 아래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정당의 지역편중을 완화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장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민경선과 관련하여 그 논의가 보다 진전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기관 입장에서 구체적인 완전국민경선 실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과 정당의 접점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생활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구·시·군당의 설치를 허용하고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를 위하여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산적한 현안이 있습니다.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주어진 현안뿐만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 중심의 선거제도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정치와 선거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담긴 고민과 열정을 널리 헤아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우리 위원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정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정책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입니다.

박세각 법제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이병석 그다음에 선거실장이 업무보고해 주실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윤석근 예.

○위원장 이병석 그래요.

선거실장, 업무보고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의 개정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두 차례의 개정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출 배경과 작성 방향, 개정의견 주요 내용 순입니다.

1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출 배경입니다.

공직선거법은 1994년 제정 이래 선거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정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관계법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개정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작성 방향입니다.

이번 개정의견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선거구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정치 개혁 논의를 위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완전국민경선제, 구·시·군당 허용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당별 지역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같은 시도 안의 지역구에 입후보한 후보자에 한하여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같은 순위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순위의 당선인은 1명으로 하되 지역구 낙선 후보자 중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불비례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전국을 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눈 다음 총정수 300명을 인구비례에 따라 권역별로 배정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2 대 1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당선인 결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 의석을 우선 정한 다음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4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 민주성 강화를 위한 국민경선 실시를 제안하였습니다.

대상 선거는 대통령선거, 임기 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이며, 경선일은 대통령선거는 본선거의 선거일 전 9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그 외의 선거는 본선거의 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실시 조건은 대통령선거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모두가 참여하여야 하고, 그 밖의 선거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중 어느 하나의 정당이라도 참여하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면을 보시겠습니다.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후보자 사퇴 제한 관련입니다.

먼저 선거일에 임박하여 후보자가 사퇴함으로써 사전투표나 거소투표에서 해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거소 투표용지 발송 마감일

전 2일 후부터는 후보자의 사퇴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선거에 끝까지 참여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의 취지를 살리고자 후보자 사퇴 등의 경우 선거보조금의 반환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6면을 보시겠습니다.

출판기념회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입니다. 지난해 10월 8일 제출한 개정의견입니다.

출판사가 출판기념회가 개최되는 현장에서 정가로 저서를 판매하는 외에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 모금을 금지하였고, 참석자도 저서를 정가로 구매하는 외에는 일체의 금품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론조사 왜곡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7면을 보시겠습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우편과 인터넷을 이용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재외선거인명부의 영구명부제 도입, 공관 외의 장소에 추가 투표소 설치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당의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시·군당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구·시·군당을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당원 관리와 당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 보고와 공개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8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당과 정치인의 원활한 정치 활동을 위한 정치자금 조달 및 현실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정경유착의 가능성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에 한하여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였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국회의원후원회 등의 모금 한도액을 증액하였습니다.

9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 강화 방안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다른 정치자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록 별도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지출 내역을 7일 이내에 해당 정당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허위·누락 보고와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제재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회계보고 주기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 지급 금액 산정에 있어 의석수와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만을 반영하고 있는데, 여성 후보자와 장애인 후보자의 추천 비율도 일정 부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면을 보시겠습니다.

그 밖의 개정의견입니다.

먼저 위헌 결정과 다른 법률의 개정 등에 따른 정비 사항입니다.

수형자에 대한 확일적 선거권 제한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수형자에 대해서도 선고형과 범죄의 종류를 고려하여 선거권 제한 범위를 달리하였고, 예비후보자 배우자의 수행원에 의한 명함 배부 규정이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와 비교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국회의원선거 참여 정당의 등록 취소 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

11면을 보시겠습니다.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금치산자와 달리 행위능력이 있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주민등록신고를 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12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밖에 실무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투표소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뿐만 아니라 기표하기 전의 투표용지도 촬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면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정

치관계법 개정 일정과 관련된 선거사무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한이 오는 10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되는 10월 16일부터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이 확대 적용됩니다.

그리고 11월 15일부터는 재외선거인 등록이 시작되고, 12월 5일까지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12월 15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 일정들을 감안하여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질의 시간은 여야 간의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을 지역구로 둔 경대수 위원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부분에 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해서는 독립 기구화가 필요한데, 지역 대표성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에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 밖에 독립적 기구로 구성하겠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저희 새누리당 경우에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작년 11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국회 심의 절차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의견을 취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국회에 두기로 되어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간 누더기 선거구 획정이라는 이와 같은 비판을 계속해 오셨는데, 이번 선거구 획정이 지난번 현재 결정을 기준으로 보면 2월 말 시

점으로 해서 무려 59곳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선관위 산하기구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둘 경우에 중앙선관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국회로 보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보고한 내용? 그것을 볼 때 이게 과연 공정성이나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견해도 또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일단 저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헌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아홉 분으로 구성을 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에서 추천을 해서 위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가장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측면에서 헌법이 그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독립 기구로 둔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같이 위원 구성을 각자 추천권을 어디에서 행사할 것인지 하는 것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또 별도의 위원회로 둔다고 한다면 법에서 위임한 대로 공정한 선거구 획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대수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난번 현재 결정과 관련해서 지역구 선거구 획정 부분에 관한 관심이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선거구 획정은 선거제도 논의가 전제가 되어야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이 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할 것이냐, 상한 인구수 하한 인구수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등등의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와 같은 획정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거제도를 마련하느냐가 선행적으로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논의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 이것이 좀 언론에서도 제대로 다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어

는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역시 정개특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정수랄지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 제랄지 아니면 소선거구나 중선거구로 갈 것인지 하는 그런 큰 틀을 정개특위에서 이미 정해서 획정 업무만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넘겨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다 위임해서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역시 정개특위에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대수 위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또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라든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조정될 수 있는 하한 인구수 미달선거구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24 군데가 있는데 그 대부분이, 다시 말씀드리어서 한 17개 내지 18개 지역이 지금 농어촌 지역입니다. 이것을 그냥 통계수치상으로 인구만 가지고 정할 경우에는 지금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대부분 조정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농어촌의 인구 감소나 고령화 등의 예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선거구 통폐합은 선거구 인구수만 가지고 따진다면 더욱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최악의 경우에 극단적으로 보면 7개까지의 농어촌 지자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이 부분에 관한 의견 어떠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현재의 그 결정 취지는 지역 특성이나 또 여러 가지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인구 기준에 있어서는 2 대 2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취지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분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1.7 대 1, 혹은 1.9 대 1 이렇게는 갈 수 있지만 2 대 1을 넘는 것은, 두 사람 세 사람이 한 사람하고 같을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안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의 결정 취지로만 본다면 농어촌의 그런 문제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이해가 됩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선관위가 제안한 의견 중에 석패율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장점으로 보면 ‘망국적인 지역 구도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의 사표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보면

‘이 적용 대상을 정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거물 정치인의 안정적인 당선 통로로 이렇게 왜곡될 우려가 있다.’ 또 이런 견해가 있는데 이 점도 고려를 하신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는 석패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 자체에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석패율이라는 것은 일본식 제도에서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 석패율은 당선자하고 표차가 아주 가장 근접하게 떨어진 것을 애석하게 떨어졌다 해서 석패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안한 것은, 일본의 제도는 동일순위에 지역구에 출마한 한 사람을 올려서도 당선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한 것은 반드시 지역구에 출마한 두 사람이 상을 동일순위에 올려서 경쟁이 되도록 만들었고, 또 그렇게 당선되는 것도 일본의 경우에는 동경이든 어디든 모든 곳에서 석패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5분의 1 이상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권역에서만 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 2인 이상을 동일순위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중에서 평균에 비해 가지고 가장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 한 사람만을 당선시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원로 정치인이나 혹은 당의 의도적으로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만을, 일본처럼 한 사람만을 배정해 가지고 당선시키는 제도하고는 다른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질의를 마쳤습니까?

○경대수 위원 예.

○위원장 이병석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정개특위의 선거관리위원회 안 중에는 아직 실시해 보지 않은 여러 획기적인 선거제도 안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러 의제에 대해서 우리 정개특위 위원님들의 관점과 질의 내용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에게는 아주 지대한 관심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좋은 의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김기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식 위원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기식 위원 지금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6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10월 13일까지 확정해야 되는 게 법률사항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식 위원 통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져서 선거구 확정하는 데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과거에 보면 꼭 얼마 걸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요, 정상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 4월 말까지는 국회에서 선거구 확정……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통상 몇 달 이상 걸리는데 지금 이번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조정 대상이 60개가 넘는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걸릴 거라고 보면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번 4월 달 법안 처리를 통해서 5월 달부터는 활동을 해야 현행 6개월 전에 확정하도록 하는 선거법을 지킬 수 있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래서 지금 여야가 작년에 정치혁신을 하겠다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 또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확정된 안이 정개특위에서 개리맨더링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독립기구화할 뿐만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을 정개특위의 심의 의결, 소위 수정 권한 없이 본회에 직회부해서 가부 표결만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양당이 다 국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올해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이번 4월 달에 이렇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시키고 동시에 정개특위의 선거구획정 수정 권한을 삭제하고 본회의 직표결 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선거구 획정 문제가 정기국회로 넘어가고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법이 정한 6개월 시한을 위법하게 또 여기면서 올해 연말에 가서 정말 세계사에 남을 희대의 개리맨더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의 정치개혁 의지 또 국민적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여부가 바로 4월 달에 국

민들께 약속했던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과 본회의 가부 표결만을 보장하는 이런 국회법 개정을 처리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두 번째로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기식 위원 지금 현행 비례대표 54명, 우리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효과가 반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위원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 제출한 것이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증원해서,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자고 하신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기식 위원 대신에 이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구를 200명으로 제안했는데 지금 현제가 결정을 했고 또 세계적으로 표의 증가성이 2 대 1을 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만 3 대 1 해 왔으니까 줄인다 하더라도 이 대의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표의 증가성과 함께 지역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는 단원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같이 양원제 국가에서는 인구 100만도 안 되는 몬태나주나 인구가 5000만이 넘는 캘리포니아나 똑같이 상원의원을 2명씩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표의 증가성만이 아니라 연방제국가라는 특성도 있지만 지역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자 이런 취지인데 우리는 단원제 국가지요.

그래서 이 단원제 국가에서 현제가 결정한 표의 증가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역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급격히 위축되니까, 예를 들면 농촌 지역의 많은 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이 4명, 5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놓은 것이 지역구 숫자가 줄어드는 대신에 비례대표를 권역별 비례대표로 해서 그런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자.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도, 독일도 그렇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그렇습니다만 비례대표가 반이거나 스웨덴처럼 전원의 의원이 다 비례대표일 경우에도 대개 그런 지역별로 비례대표를 배정해서 소위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장치를 갖고 있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100명으로 비례대표를 늘리고 거기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현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많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소위 지역 대표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기식 위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역별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소선거구제에서의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해 주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역의 어떤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표의 증가성으로만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대의제 기관에서 소위 수도권이 과다 대표되어지는 문제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의원정수가 OECD 평균으로 볼 때 적습니까, 많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의원 수가 OECD 국가에 비해 가지고는 좀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대략 OECD 평균으로 했을 때 의원정수가 우리 인구조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정확한 숫자는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 제가 위원이었고 지금 사무총장께서 실무 책임자로서 그때 같이하셨었는데, 그때 통계로 보면 대략 한 356명 정도가 OECD 평균에 부합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지금 여러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일본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의원 숫자가 좀 적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에 전념해서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하고 또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지역구 선거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청년층이라든가 이런 세대를 반영하고 또 계층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소수자를 반영하기 위한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또 표의 증가성 때문에 훼손된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



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그래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지역 대표성 문제와 관련해서 OECD 일반적인 것으로 볼 때 의원정수 문제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의원정수가 많이 적다라는 것은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민의 감정이 그것을 아직은 인정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는 데 있어서 비례대표 숫자를 적정한 숫자만큼 늘렸을 때 효과가 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의 당위성과 함께 국민들을 설득해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심상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을 제안한 것은 선거법 개정의 핵심에 다가갔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안을 내셨으면 이 안의 정당성을 국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를 2 대 1로 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 말하자면 모든 유권자의 뜻값은 평등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제도 설계에서 핵심이다 하는 것을 재확인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게 이해를……

○심상정 위원 지역도 말씀하시고 세대 또 앞으로 계층도 다 대변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모든 유권자의 뜻값은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는 것이 인구편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표함에 담긴 표 가운데 절반이 넘는 표가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버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례대표제포럼 자료를 살펴보니 13대, 88년 13대 총선부터 19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일곱 번의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 선거에서 1등 당선자에게 표가 가서 산표는 987만 표이고 죽은 표는 1023만 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유권자가 표를 던졌을 때 지금처럼 1등 당선, 말하자면 승자독식 선거제도하에서는 죽은 표가 50.9%로 산 표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는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을 위해서 소선거구제를 보완하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가장 표의 등가성, 비례의 원칙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비례대표제도지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또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독일식……

○심상정 위원 총장님, 그건 장단점의 문제가 아니고요, 단점은 물론 보완해야 되겠지만 헌법정신은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선거제도가 설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것을 보완하는 제도가 18%의 비례제기 때문에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자기 뜻값을 제대로 못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7대 때 진보정당이 출범을 했는데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열린우리당은 6만 9000표로 지역구 1석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46만 표 가지고 1석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신생정당이나 진보정당은 단박에 1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47만 표하고 6만 9000표 하면 거의 7분의 1 뜻값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소선거구제의 과반 가까운 사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양당 중심 정치로 지속되면서 그 득권을 누리는 양당이 이 선거제도를 손대지 않은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선관위에서 핵심을 바로 짚어서 안을 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그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지역구 인구편차를 2

대 1로 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 대 1로 줄일 때에는 지역구 숫자를 늘리지 않고 가능합니까, 인구편차 조정만 볼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 문제는 뭐……

○심상정 위원 그것 시뮬레이션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것은 저희는 국회에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총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가 주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64개를 선거구 확정 숫자를 2 대 1로 좁혀야 되는데 이것을 조정하는데 현재 246석의 지역구로 가능하냐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총수 300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국회에서 지키려면, 이행을 하려면 지금 지역구 246석 갖고 안 된다는 게 핵심인데 지금 누구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지금 정치 불신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다 ‘앗 뜨거’ 하고 뒤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무슨 채주로 그러면 246석 가지고 현재 판결을 지킬 것인지…… 그러니까 일부는 또 이것을 가지고 비례를 줄이려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우리나라 선거법의 표의 증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제도를, 더 역행하는 그런 발상도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식 위원이 제기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중선관위에서 지역과 비례를 2 대 1로 하자 이런 안을 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해서도 지역구 의석수가 더 늘어나야 되고 비례 100석을 늘리기 위해서도 이 안은 사실상 현재의 정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늘려야 되는 안이지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OECD 평균 중에, 33개국 중에 국회의원 1인당 유권자를 대변하는 숫자가 우리보다 많은 데는 인구가 1억 넘는 3개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평균 우리나라가 의석당 대표하는 의석수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2배를 대표하는 거지요.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실제로 대표성을 강화하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농촌지역 지역구 축소하지 않고 대표하려면 지역구 늘어야 되고

표의 증가성을 바로잡으려면, 헌법정신을 지키려면 또 의석수를 늘려야 되고 또 우리 국회가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많은 계층의 대표성도 강화하려면 의석을 늘려야 되는데, 이 핵심적인 의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전혀 발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60석으로 늘려서 240 대 120석으로 하자는 그런 국회의원 정수 확대, 특권 축소안을 냈습니다.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심상정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국회에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석수를 늘려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거고 또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병석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정개특위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여러 제도들이 이제까지 시행해보지 않은 여러 실험적 제도에 대한 부분도 아주 깊이 있게 논의돼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안을 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이제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정확하고 소신 답변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정개특위에서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필요한 대로 협력을 구하는 부분은 협력을 구하는 별도의 절차를 밟더라도 질의와 답변 속에는 모든 것을 쏟아놓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우리한테 주어진, 8월 31일까지 이 주어진 짧은 기간 동안에 정치개혁의 중요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국회에 버무리고 넘겨버리지 마시고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안을 신념 있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게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다음에는 박대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동 위원** 울산 북구 출신 박대동입니다.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이런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가 담겨진 실험적 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선관위가 아까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부한다는 기분으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는 문제라든지 일반적으로 게리맨더링을 걱정하시는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할 때 이것을 제3의 기관인 선관위에서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천하고 또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인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선거제도에 대해서 의회 바깥에서 결정하는 외국의 예들이 많이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래서 그게 시험을 하고 적용한 결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대부분 많은 국가들이 외부기관에 두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행정부 내의 훈령이나 이런 것으로 정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기식 위원님이나 심상정 위원님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워낙 새로운 제도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문제랄까 예상되는 점 이런 것을 한번 같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비례대표제가 병립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병용제라는 제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박대동 위원** 실제로 이것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먼저 지역구라는 것을 전제로 해 놓고 난 뒤에 표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의석수나 이것을 확

정짓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초과의석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심상정 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금 독일이 이것을 채택하고 있는데 2005년도 총선에서 16석, 2009년도에 24석, 2013년 총선에서 초과의석 4석 그래서 보정의석이 29석이나 나온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가 맞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대 총선에서도 우리가 의석이 하나 늘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박대동 위원** 그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었던 것 아마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의석이 느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선관위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으면 좋겠는지, 아까 홍보란 말씀은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사항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는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지역주의 문제 그리고 표의 등가성 문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는 방법은 저희가 보기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것도 독일식 병용제 형태로 가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치가 의석수 몇 석이 불가피하게 초과의석이 나와서 증원이 되는 것 이것은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석을 기준으로 해서 출발을 하더라도 권역별 비례를 적용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초과의석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이 초과의석이라는 것이 독일에서 초과의석 나오는 것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출발 자체가 비례의 등가성을 절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권역별 비례를 적용을 하면서 일부 초과의석이 제 생각에는 많이 나와도 영호남 지역에서 한 5석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왔을 경우에. 그런 정도는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대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비례대표 숫자가 늘어날 경우 당연히 지역구하고 관계에 있어서 지역구가 줄어들거나 결과적으

로 전체를 늘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비례대표가 확대가 될 경우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좀 있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런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런 문제는 저는 모든 것이 법으로 다 정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도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의문들을 국민들께서 가지는 그런 부분은 당에서 함께 노력해서 투명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당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권역별 비례를 했을 경우에 각 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일찍이 확정을 함으로 해서 그에 의해서 또 국민의 지지를 받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보다 더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동 위원 한 가지 더 공부할 게 있어서 우선 그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구·시·군당, 지구당 허용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04년도에 돈 먹는 하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 여론을 감안해서 이게 폐지가 되었던 건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정치문화나 선거문화가 많이 선진화되고 자리를 좀 잡아갑니다마는 혹시 이것이 부활하는 데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극복하시고 싶은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는 첫 번째, 지구당이 과연 돈 먹는 하마인가…… 지구당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보다는 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04년도 전에 있었던 그런 정치환경하고는 지금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당시에는 꼭 지구당이 있어서 그렇게 정치를 하는 데 돈이 많이 든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제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기부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철저하게 규제되지 않았고 합동연설이나 혹은 당원 연수, 당원 단합대회 등등 여러 가지 정치환경이 돈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하에 있었는데 저는 모두 다 지구당이 그 허물을 뒤집어쓰고 폐지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원내 정당화를 지향을 한다라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지구당을 없앴거든요. 그런데 원내 정당화 이권 미국제도를 상상을 하면서 저희가 그쪽을 지향을 했는데 미국의 선거환경은 또 저희하고 다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제한도 없고 또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누구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정치에 뜻을 둔 사람이고 자기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정치자금을 모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환경과 달리 저희는 당시에는 지구당이 있으면서 지구당 원외 위원장들이 후원회를 두어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고 또 지구당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거 다 말살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현장에서는 원내 현역과 원외 도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균형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안고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구요.

또 무엇보다도 현역의원들조차도 지금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가 상당 부분은 정확히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몇몇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치 현실을 바로 보고 바로 펴 줬을 때 활동하시는 정치인 모두가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스스로 법을 어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다른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 정당제도에 있어서는 지구당을 두지 말라 하는 법은 제가 알기로는 지구상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한을 해 가지고 어떤 당 조직을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정당을 어떤 정치기구로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요건은 갖춰라, 오히려 지구당을 이런 정도로 확보를 하라 이런 법은 있을 수 있지만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법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병석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대동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다음에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경기도 부천 소사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입니다.

선관위가 한국 정치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그리고 유권자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선거법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번에 정치개혁을 하는데 아주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선관위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의석수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지금 200석으로 지역구를 축소를 하고 100석으로 비례대표를 늘리는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권역을 지금 6개 권역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게 지금 200석으로 해서, 현행의 246석에서 200석으로 축소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어느 정도의 검토가 있었는가, 말하자면 현실적인 검토가 있었는가 그리고 또 원칙적인 검토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병석 위원장, 정문헌 간사와 사회교대)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세 나라를 제외하고는 지금 의원 일인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호주 같은 경우 10만 명, 프랑스가 7만 명으로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지금 인구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수밖에 없다, 늘리지 않고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관위는 이 부분의 의석을 늘린 것 같아요, 비례대표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현행보다 이것을 늘리지 않고는 권역별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의미를 갖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상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지역구 의석을 그냥 줄이는 그런 방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선관위로서는, 사실은 선관위나 또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나 또 시민사회나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입장을 정하는 그런 기구나 개인들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의 객관적인 상황들을 다 검토를 해서 좀 원칙적으로 입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 부분도 말하자면 너무 정치적인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렇게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치권이야 여러 가지로 그런 정치적 판단이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 수도 있겠지만 선관위가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또 지적을 하셨고,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가지고 의원 1인당 국민을 대표하는 숫자가 저희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의석수……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말하자면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러니까 그……

○**김상희 위원** 결국은 그런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라기보다 국민의 감정을 범이라는 게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

○**김상희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꼭 합리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말하자면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속에서 국회가 그 부담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오히려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선관위가 정치적 부담을 갖기보다는 국회가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이 논의를 하는 것을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선관위 안은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와 그리고 국민들의 전향적인 사고와 논의들 속에서 합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투표 연령 하향의 문제라든가 투표 시간 확대 문제라든가 또 우리 당에서 얘기했던 결선투표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투표 연령이 19세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상희 위원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만 16세입니다.

저는 지금 이 투표 연령을 적어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관위가 왜 이번에 선관위의 안을 내면서 이 부분이 빠져 있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 이 부분이 빠져 있었지요? 입장이 무엇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것은 이미 그 법안이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법안 발의가 되어 있으면 선관위가 입장을 내지 않는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선관위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선관위로서의 입장, 안을 낸 거였는데 이 부분은 그냥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선관위가 굉장히 좀 정치적 판단을하신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또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관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투표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희가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을 할 때에 국회에서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18세나 17세로 갔을 때에 고등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지 않느냐, 또 고등학생들까지도 정치에 그렇게 투표권을 가지

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그런 반대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면에 또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대부분의 선진국들 경우에 18세, 17세까지도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상희 위원 16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하고 있고 일본마저도 아마 18세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개혁특위에서 또 의견을 나누셔 가지고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어떤 안도 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론은.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문헌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대구 서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께서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 대 1의 기준에 도농복합 또는 농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좀 약화시키고 수도권 지역의 의석수 쏠림 현상이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총장님께서서는 인구편차 2분의 1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상훈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구는 그런 기준에 좀 영향을 받지 않는 대도시 지역이긴 합니다마는, 만약에 사무총장님께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충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행정·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지방국립·사립대 졸업생들의 50% 이상이 일자리를

찾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최근 10년 내 인천광역시의 인구가 50만이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1관문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개설됐기 때문입니다. 그 공항을 배경으로 해서 배후 복합개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상당한 정부 예산의 SOC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취업을 하려야 할 그 기회가 지방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이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편차 2 대 1의 기준 자체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계적이고 법조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인구편차 2 대 1이 넘어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타당합니다.

공직선거법 25조1항에 어떻게 돼 있나요?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결정하는 기준에 인구 이외에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유한 지역의 정서·문화·전통·역사 이런 게 포함돼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수도권의 어느 한 자치구에 국회의원이 3명이고 표의 증가성 때문에 지역 농촌의 6개 군이 통합해서 서울특별시보다 인구가 더 넓은 지역에 국회의원이 1명이라는 게, 그게 당위성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위원님……

○김상훈 위원 표의 증가성만을 따졌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위원님 말씀……

○김상훈 위원 제가 잠시 더 이야기드릴게요.

국회의원은 국익을 위해 활동하기도 하지만 불가피하게 그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 때문에 수도권에 의석이 점점 쏠린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적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기회

균등 요인을 각 지방에도 골고루 배치를 하고 배려를 했다는 그 전제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는 표의 증가성, 2 대 1은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불균형 개발이 심화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대 1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총장님 의견 어떠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위원님 말씀에 저 역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취지만을 가지고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공직선거법에서의 행정구역·지역·지세 등을 감안하더라도 인구 기준 2 대 1을 넘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의 말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가 되는 최종 결과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자체에 표의 증가성 플러스 지역 대표성이라는 부분도 귀중한 비중으로 판단이 됐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조만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확정하더라도 지역대표성이라는 부분이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직선거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선관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특히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한 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좀 부조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선관위 의지는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눌 때 여러 가지의 의석 배분 자체가 수도권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약에 스타트를 한다면 이걸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특히 과연 이 제도 자체가, 제도 자체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재의 한국 정치 현실에서 반영할 그런 가능성과 여지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도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을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만약에 석패율제도와 같이 동일 국회의원 후보에게 지역구 출마와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 가능성,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는 그……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컨대 비례대표 후보로 정당이 후보자 명부를 제출할 때 무슨 기준으로 그 명부를 1번에서부터 몇 번까지 줄을 세우느냐 그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것은 정당이 정할 몫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동일 순위의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 여러 명을 뒤서 그 자체에서 또 경쟁을 통해 가지고 다수 득표를 얻은 사람이 비례대표 당선자로 결정이 되게 한다는 것은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또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문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 전주 완산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2 대 1 판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상당히 우려할 만한 결정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 체계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초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사실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될 거라고 하는 그 문제의 문제의식을 살려서 저는 이후의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고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선관위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은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얘기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의원정수를 그대로 두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00명, 100명으로

하겠다는 그런 안이잖아요?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들으면서 ‘국민감정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무총장님이 생각하시는 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에 지역구가 200명으로 줄고, 200명으로 줄은 조건에서 보자면 농촌지역의 국회의원 숫자가 급격하게 줄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선관위 안을 그대로 해석하면 농촌지역의 의원 수는 줄여도 좋다, 그래서 줄인 것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의 지역구 의석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24석 정도를 줄여야 됩니다.

**○김윤덕 위원** 총장님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막는 게 아니고요. 총장님, 그러니까 문제를 예를 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건 때문에 의석수는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지역구 200 대 100으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정치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중앙선관위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현재 선거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선차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의 조건에서는 의석수를 고정하고 농촌 등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그것을 관철해야 된다, 이 주장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거지요.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대로 독일식 병용제를 채택해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김윤덕 위원** 아니요, 사무총장님,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역주의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쪽 측면에서는 농촌지역이 획기



적으로 대표성이 죽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역주의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면 선관위에서는 소위 말하면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추가적으로 또 다른 보완장치를 선관위가 내놓아야 된다, 발언해야 된다, 그것을 정개특위에 미뤄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게 있겠느냐, 이렇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선관위 안이 이어져서 뭔가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되어 가는데 논의가 이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혹은 또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의원정수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의석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의견이 모아진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저는 충분히 국민들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윤덕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잘못 위험성 논의가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의원정수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논의된,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것 수용할 수 있다, 이 정도 선인 거고요. 일단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200 대 100으로 하고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경우에 지금 당장 농촌지역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안 해도 현재의 체제 내에서도 저는 이미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화되어서 우리나라의 국토 불균형이 더더욱 심화되어 가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정개특위에 어설픈 공을 던지는 게 아니고 우리 선관위사무총장님 말씀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획기적인 제도라면 그 획기적인 제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의원정수 문제, 농촌 등 국회의원 배정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 선관위에서 보다 분명한 답을 통해서 발언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정개특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와 같은 다양한 선관위의 제안과 더불어서 논의되는 형태로 가는 게 저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 다……

그래서 제기한 중요한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논의에 대해서 선관위가 침묵하지 마시고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문헌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 서초갑의 새누리당 김희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선관위에서 이번에 정치개혁 관련 또 선거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셨는데요. 그동안 우리 정당제도 또 선거제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을 나름대로 다 인식을 하시고, 나름대로는 이해가 가는 방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정개특위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많은 논쟁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그것인데, 지금 현행 헌법은 200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요? 공직선거법에 299석 또 19대에서는 300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각 정부기관의 국민 신뢰도 조사가 있었는데 국회가 불행히도 좋은 점수를 못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거부반응을 보이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희선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우선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논의한 물을 다시 바꾸고 정하고 하는 이 관행, 이것도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선거구 획정을 10년 단위로 하도록 이렇게 법에 못을 박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희선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는 한 두 번,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

의원 임기가 4년이면 8년마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것을 아예 법에서 확정시켜 놓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것 역시도 의회에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미국에서 10년 단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센서스를 10년……

○**김희선 위원** 우리는 한 5년 단위로 하고 있지요?

(정문헌 간사, 이병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도 사실은 인구센서스 조사를 5년마다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김희선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구 대 비례대표를 2 대 1로 하자, 그래서 300명이면 지역구 수를 200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100으로 하자…… 그동안 우리 비례대표제도가 사실은 당초 취지하고는 달리, 조금 본래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된 면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서 지역색을 완화시켜 보고 전국 정당을 지향하자 하는 그것은 참 좋은 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246석의 지역구 수를 46석을 줄이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2 대 1로 하자는 안을 내셨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19대 총선에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저희 새누리당 같은 경우 6개 권역으로 나누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전국에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못 내는 정당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다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취지는 좋은데 19대 총선에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저희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1명 정도밖에 할당이 안 되는, 또 권역별로 나누다 보면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초 취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각하시는 전국 대표, 표의 등가성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을 발휘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를, 독일식과 일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역구 수하고 연동되는 독일식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것은 독일식이지요? 중앙선거관리 안으로 해도 초과의석이 나오는 거고, 일본식으로 하면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희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는 독일식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결국은 표의 등가성과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독일식 병용제가 더 크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식이라고 한다면, 비례대표 100석이라고 한다면 그 100석만 가지고 정당의 득표율을 곱해 가지고 정당의 비례대표를 나누게 되거든요. 반면에 독일식이라고 한다면 전체 300석을 가지고……

○**김희선 위원** 그 취지, 제가 그 내용은 아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한 석이라도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들을 고려할 때 일본식으로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 정당으로 가는 데 큰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아까 총장께서 ‘비례대표 그 순위를 각 정당의 자율에 맡기기는 했는데 무슨 기준으로 순위를 정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아까 제가 지금 우리 중앙선거관리 안대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한 명밖에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가능성을 대비해서라도 각 정당에서 자기네들이 취약한 정당의 그 숫자를 지금 식 비례대표로 순위를 정해서 몇 명을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숫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하고 비교를 해 보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과거에 저희가 개정의견을 한번 그런 식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취한다 할……

○**김희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게 많아 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안을 내셨는데요. 이게 전 정당이 동의하지 않고 한 정당만 하는 경우에도 선관위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모두 다 해야 되고……

○**김희선 위원** 아니, 말고요,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국회의원 선거는 예, 예. 비용이 전체적으로 모든 지역구에서 한다고 하면 한 3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정당만 하는 그 비용을 중앙선거위가 부담할 경우에 비용은 똑같습니까, 그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똑같습니다.

○**김희선 위원** 그것을 중앙선거위가 부담할 용의가 있다, 이런 뜻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김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범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대전 서구를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김용희 총장님 이번에 어려운 중앙선거위 안을 내셨습니다. 그 용기와 결단에 일단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중앙선거위 안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토론을 다 거쳤습니까? 간단하게 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전제가 제가 낸 것은 아니고요,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서 제출한 의견이고요.

○**박범계 위원** 당연히 이인복 중앙선거위원장의 의견과 의사도 담겨 있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박범계 위원** 그리고 19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정당의 지역별 의석 분포 또 득표율 이런 것들을 고려한, 어느 정당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이 선관위 안을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해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정확하게 어떤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더라도 이후에 다가올 선거에서 이렇게 의석이 점유될 것이라든가 것은 예측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박범계 위원** 해 보시기는 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이것 안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했는데……

○**박범계 위원** 해 봤다.

지금 대체로 위원들에게 설명한 중앙선거위 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와 용어 사용에 동의하지는 않으셨지만 석패율제 이 두 가지를 설명하셨지만 구체적인 모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물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않았습니까?

실사 그것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할지라도 그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치개혁특위에 비공개로 제출할 의향은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소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제출하십시오. 중요한 것 같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박범계 위원** 만약에 역설적으로, 올해 내로 선거 제도와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론이 나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입니다.

만약에 국회가 정개특위나 본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상해 보셨습니까?

일단 헌법재판소 결정이 소위 법률적 강제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강제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12월 31일까지……

○**박범계 위원** 옆에 정책실장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윤석근** 헌법재판소에서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으

면 내년에 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것은 어떤 효력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윤석근** 헌법 재판소의 효력입니다. 법률……

○**박범계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아니, 현행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박범계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선거제도, 특히 선거구 획정 이런 문제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별로 단편적으로 어떤 헌법적 가치를 유리할 때는 유리하게 적용하고 불리할 때는 배제하는 그러한 고려가 아니라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헌법 친화적, 헌법 합헌적 해석, 헌법의 가치와 이념을 종합적으로 동원된 기준을 고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설명 안을 보면 소위 권역별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를 시정하겠다. 지극히 옳은 말이지요.

그다음에 소위 석패율제는 특정 지역에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 그러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은 수도권과 충청권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떤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될 문제냐, 영호남만의 문제냐라는 그런 기준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박범계 위원** 역설적으로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한 지역에 몰표 투표가 안 해졌다 그래 가지고, 반대로 영호남에 한 정당에 몰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만 고려한 소위 권역별 비례대표 플러스 석패율제 이것은 자칫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 통일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하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적용하지만 석패율제의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5분의 1 이상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효력을……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양당이 지금 5분의 1 이상의 의석을 내지 않습니까, 지역

대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박범계 위원** 그러면 사실상 석패율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지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없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것이 통일적인 한국적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제도가 특정 지역을, 설사 영호남에 어떤 지역감정이 있는 것이 현존하고 그것이 표로 연결되는 것이 현존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과연 그러한 지역적 편중을, 전체 제도를 도입하는 통일적 기준으로 설득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느냐라는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을 내지 말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박범계 위원** 또 하나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총장님의 말씀이 다소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반전에는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와 국민민주주의, 표의 등가성이라는 부분에서 놓여온 문제는 불가피하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하셨어요. 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정개특위에서 결정하면 국민 설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같이 하셨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중앙선거관위가 현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대통령제 헌법을 메스를 가하지 않고 그 전체 아래서…… 소선거구제는 대통령제하고 친화적이예요, 맞지요?

그런데 중앙선거관위 안은 지금 어찌되었든 소선거구제를 지역 대표로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자. 그러면 소수 정당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제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가 어찌됐든 정당 대표, 득표율 대표를 하는 데는 상당히 민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가지고 지역 대표를 보완하자는 얘기인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 점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은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는……

○박범계 위원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습니다. 국민을 설득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큰 칼을 지금 꺼내 놓으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용기 있는 판단이라고 저는 치하를 드렸고.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이 장점을 충실히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의원 정수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의지의 문제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저도 지난번 18대 때 19대를 준비하면서 최종 막판까지 의석 한 석을 가지고 합의를 못 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석을 한 석도 아니고 거의 이렇게 40석 이상 줄여 간다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일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권역별 비례를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지역구 의석수를 가지고 현재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24석은 손을 대야 된다, 그런 현실을 우리는 또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권역별 비례는 저는 정말 어떤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체 의석을 늘려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우리가 이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민현주 위원 저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치개혁특위가 출범하면서 국민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선거구 획정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소지요, 인구 편차 허용 한계가 상하 2 대 1 넘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선거구 조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고, 선관위에서도 이에 관련해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큰 틀에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

성은 과거와는 달리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느냐, 아니면 선관위와 독립된 제3의 기구로 별도 독립시키느냐의 이슈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는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의견을 드려 보면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앙선관위원회에 뒀을 때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비판적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는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느냐, 아니면 별도의 독립기구로 두느냐 이 역시도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걸어온 길도 그렇거니와 또 전체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헌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 그리고 대법원에서 선출된, 지금 현재의 위원 구성과 같이 그런 정치적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헌법에 의해서 구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별도의 독립기구로 해야만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만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둔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의 독립기구로 두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행정적 지원이나 또 예산적 지원이나 그런 것들만 하는 것이고 별도의 독립기구로 뒀을 때에는 아마 상설기구화해서 가야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국가의 예산 측면에서도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민현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된 기구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인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적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끼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산하에다가 둔다고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독립기구를 두는

것과 똑같이 위원 추천권을 어디 어디에서 행사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현주 위원** 그다음 문제가 이 선거구 획정을 독립기구로 해서 이전시켜서 그 안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후에 국회로 넘어와서 심의 절차 결과 의결까지 어떤 절차를 경험하느냐, 어떤 절차를 제도화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더 이상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해서 표결에 부친다라는 의견과 정개특위나 그 외에 국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후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만약에 별도의 독립기구를 뒤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예컨대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다시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시 조정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행 제도와 거의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의 여러 차례의 경험에 의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단 한 석을 가지고도 여야가 양보하지를 못해 가지고 거의 선거를 치를 수 없을 정도의 기한까지 합의를 못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정할 때에는 제대로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현주 위원** 그런데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수 이외에 그 지역 발전 문제 그다음에 문화, 전통도 중요한 고려 사항 중에 하나이다, 지역적 동질성 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해외 사례를 보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 밖에 둔 많은 국가들에서도 정치인이 직접 참여하는 국가가 있고요,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인이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뚜렷한 입장을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현역 국회의원이 독립된 기구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요. 참여한다면 이런 지역구 획정 문제에 있어서 인구수 이외에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이 있다면 현역 정치인이 참여함으로써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개의 대립되는 팽팽한 입장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는 현역 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국회에서 몇 명의 추천권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여야의 추천 위원을 돕으로써 그런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영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선 위원** 서울 구로구를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제도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 제도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번에 선관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제도를 제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안하실 때 이것이 인구 비례에 따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제안하신 것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래서 농촌에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들의 반대가 지금 있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의 상원 같은 경우는 그 주의 인구나 지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 주에서 2명씩 이렇게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 대표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텐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지역 대표성과 지역 균형 문제를 고려해서 6개 권역을 동일한 숫자로 이렇게 의원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지금 권역별 비례를 하면서 인구 비례로 나누었을 때 농

촌지역의 경우에 지금과…… 굉장히 불이익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가 실제 적용을 해 본 결과 저희 의견대로 갔을 때의 의석수의 비율, 예컨대 서울지역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와 비율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권역별로 의석을 죽 배분을 해 보니까 결국은 호남지역에서 한 몇 석 정도가 줄고 그 의석이 충청권하고 경기권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인구 불균형 문제, 그 문제가 조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권역별 비례를 함으로 해 가지고 인구비율 대 의석수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는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본 거지요. 미국의 상원처럼 지금 선관위가 나눈 6개 권역에 동일한 숫자의 의원을 배치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아니면 미국처럼 2명이면 2명 이런 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저는 지역 균형이든가 지역 대표성 문제를 좀 해소하면서 농촌지역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절충안으로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선관위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구요. 특히 의석 정수를 권역별로 배분을 할 때 과거의 예에서 보면 미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모든 권역에 먼저 한 2석 정도나 3석씩을 배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의석을 인구수 비율대로 해 가지고 배분하는 그런 방식도 저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선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정당 후보자 추천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국민경선 실시, 이것이 오픈 프라이머리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어떠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희 안에는 완전 국민경선제인데요. 오픈 프라이머리에 여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

로? 그런데 저희는 전형적인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원들을 먼저 전제로 하고, 당원들은 자기네 정당에만 참여를 하고 일반 국민들은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형태가 아니고, 당원과 일반 국민 모두가 어느 정당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하든 자유로운 그런 형태의 완전 국민경선제고요.

그래서 신고·등록제가 아니고 선거인명부를 자체를 관에서 직권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선관위의 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박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또 얘기하고요.

선거구 확정 문제도 지금 이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일단 이 선거구 확정 문제는 독립기구를 둔다는 데는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기구를 어디에다 두느냐의 문제는 상당히 여야 간에 지금 이견이 있는 것이고요.

이 독립기구를 두는 데는 여야가 이견이 없지만 그러면 이 선관위가, 선거구 확정이 됐을 때 이것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입법권인데 입법권의 문제와 독립기구와의 연관성 문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외국 사례, 선진국 사례 이것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자료를 드리겠고요.

**○박영선 위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선관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선거구 확정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권을 맡겨서,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바로 회부해서 한나라고 규정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국회에서 입법을 함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도, 제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외부에 기구를 뒤서 법률로써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에 맡겨

가지고 외부 기관에서 결정한 것을 바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박영선 위원 그리고 아까 사무총장님 발언 중에 지구당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법을 어기고 있는데 그것이……’ 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무총장님이 조금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발언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오히려 저는 선관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선거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통일된 안을 내는 게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 의견이 다르고 각 지역 선관위 의견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석 박영선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끝내고 오찬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들어오셨습니까?

○김명연 위원 예.

○위원장 이병석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단원구갑의 김명연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 답변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명연 위원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명연 위원 지난 2월 25일 날 중앙선관위가, 저는 총장님이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까지도 봤는데, 개정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불합치 판결 이후에 개정 의견을 냈는데 그 개정 의견이 불합치 판결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선거구 획정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 내용과 이 개정 의견하고 내용이 일치해서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는 내용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권역별 비례와 관련지어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김명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선거구 획정을 3 대 1을 2 대 1까지 이렇게 내용을 강제화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도시지역에 늘어나는 지역구가 더 생기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명연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과연, 국민 정서가 우리가 이것을 늘렸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예측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일치 못 하고 개정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에 보면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포함하고 있던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

늘고 줄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국회에서 논의할 때 국민들한테 저항을 받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기가 상당히 적절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개정 의견이라고 국회와 사전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무시되고 그냥 그대로 언론에 공개가 돼 버리니까 이것은 사실 체계적으로 주어 담아서 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저기가 됐어요.

아마 정개특위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도 여기의 발언 하나하나가 속기가 돼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면서 이것을 늘리자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것에 대한 의견이 엄청나게, 또 언론들이 그동안 수요조사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 돼 버린 거지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없게



꿈 입장이 난처하게 됐는데, 과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그런 의견들을, 무슨 연구소에서 연구과제 내던지듯이 막 무리하게 해도 되는 건지, 그 임무인 선거를 관리하고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하지 않았나 이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우에는 지금까지 90년대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십 차례의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에도 의견을 낸 거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법률에 근거해서, 중앙선관위는 개정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돼있고, 그것은 의견에 불과한 겁니다. 중앙선관위의 의견이고요.

○김명연 위원 당연히 의견이지요. 그러니까 개정 의견이라고 제가 명시를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 비례대표를 100명까지 늘리면, 그러면 지역구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명연 위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인구 편차를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게끔 해 봤어요. 그런데 그거대로 가면 줄일 수가 없는 거고, 또 거기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는 것이 그거대로 갔을 때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의원 수에 대한 불균형……

한 예를 들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할 때 지방에서는 ‘규제해라’, 수도권에서는 ‘완화해라’ 이런 게 있을 때 너무 농촌지역의 의원 수가 확 줄어 버리면 지방의, 농촌의 소외계층에 대한 대변은 누가 합니까?

국회는 어차피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의사일정이 결정되는 건데, 내용들이,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수고 소외되는 지역에 대해 대변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난감해져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의원 수 또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수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정무적인 판단도 상당히 민감한 건데 그냥 획일적으로 인구 기준으로 이런 의견이 딱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 가야 될지 난감한 차에 거기서는 비례대표를 늘려라 하는 의견을 탁 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차례에 걸쳐 개정 의견을 제시했지요. 그러면 많은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문제가, 타이밍이 너무 적절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의견을 제시했으면, 이렇게 해 갖고 낭패를 본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또 했는데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경우도 많은데, 이런 거야말로 참 어려운 걸 갖다가 그런 경험이 많은 선관위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툭 던지고 ‘의견이다’ 해 버리면 국민들이 지금 저하고 이렇게 질의 답변 하는 것처럼 ‘아, 저것은 의견이니까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이해해 주는 그런 정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라는 데에서 ‘비례대표 늘리고 지역구 줄여라’ 이런 의견을 냈는데 저 국회가 왜 안 하는가, 제가 설령 지금 이런 발언을 하더라도 ‘저 국회의원은 지역구 줄까 봐 걱정을 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이런 것이 형편이에요. 현실인데, 그런 거를 너무 고려를 안 하고 무책임하게 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전제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의 지역구 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현재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또 불가피하게 우리 의견이 아니더라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하한수를 맞추기 위해서.

○김명연 위원 그렇지요, 조정을 해야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또 한 20여 석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지역을 대변한다고 한다면 꼭 구·시·군 의원만이 지역을 대변하느냐, 권역별로 대변하는 것도 농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은가……

○김명연 위원 절대 안 그렇지요, 현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권역별로 했을 때 중심에 있는 인구하고 외곽의 인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랬을 때, 거기에 모든 정책이 반영돼 있을 때…… 정치라는 것은 거의, 지방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사람이 많은 쪽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이 반영되게 돼 있는 겁니다.

지방에 보면 도시와 농촌, 옛날에 통합하고 그럴 때 농촌 지역, 외곽에 있는 데서 왜 반대했는

지 아세요? 자기네 의견들은 반영이 안 되고 모든, 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좋은 것들은 인구가 많은 도심으로 집중이 되고 사람들이 회피하는 그런 정책들은 외곽으로 오기 때문에 이걸 다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의원 수가 일정 수준 서로 이렇게 비중이 맞아야지, 비율이 맞아야지 되는 건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100, 200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수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딱 끊어 주니까 100명으로 늘려야 되는데 이것 왜 안 하는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병석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 모든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경기 안산시 단원 아십니까? 사실 저희 의견대로 한다고 한다면 미리 다 짐작할 수 있는 거지만 경기권, 수도권 쪽에 아무래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지요, 단 1석이라도.

○김명연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지금 우리 지역구를 갖다가 대변하는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의원들께서는 어느 지역 출신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병석 그래요, 다시 보충질의에서 해주십시오.

다음에는 백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백재현 위원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선관위가 지금까지 선거도 여러 번 치렀고 개표 과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오랫동안,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우리 선거제도가 선진화돼 있고 잘돼 있다고 평가를 하지요, 자평이? 그런 데 대해서 자부심 같은 것도 있는 건 사실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백재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나름대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선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이 이래서 따라가야 할 제도도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선거 결과,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통합시켜 내고 비례성을 확실히 갖고 등가성을 확실히 유지해 가는지 이런 등등을 잘 맞춰 가면서 우리나라로 독특한 제도, 창조적인 제도를 이제는 만들어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외국에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새롭게 못 만든다 이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 있게, 그동안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창조성 있게 과감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동의합니다.

○백재현 위원 그래서 외국에 선례가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말에 동의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백재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편차 3 대 1을 2 대 1로 고치라는 것이 이번 정개특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으로서 하나의 동기를 부여한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더 고쳐야 할 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큰 줄기만 얘기를 한다면 표의 등가성을 제고시키는 일이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치적으로 공정성과 중립성과 독립성이 어떻게 확보되도록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개특위에서 고민해야 할 일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백재현 위원 그다음에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지요. 특히 아까 김명연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농촌에 대한 대표성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지요.

그다음에 비례성의 제고, 유권자가 던진 표와 정당이 가져가는 의석 수가 비례성이 맞아 가야 되는 것이 또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잘 안 맞아 간다는 문제점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영원한 정치의 숙제인 영호남에 대한 지역주의 완화의 필요성, 제도를 통해서 지역주의를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 이런 노력을 만들면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점은 현실적인 수용성이 있느냐,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고민이 되고 있는 숙제예요, 과제예요. 아마 이번 정개특위의 가장 문제점이 이러한 고민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가 그나마 내놨던 안들을 종합해서 보면 그래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 제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들의 흔적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뜻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만들어서 지역주의를 좀 더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가고 등가성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만들 때, 지금 서울 하나하고 경기·인천·강원을 묶었는데 저는 서울과 인천을 묶고 경기와 강원을 묶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이 서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서울하고 인천을 묶고 경기·강원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인구에 비례해서 비례대표제를 전부 분리를 하고 나눠 주는 형태로서 기본 수로 잡았는데, 저는 100석이 되든 70석이 되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일정 부분 좀 더 과감하게, 예를 들면 양원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성이라는 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7개 지역에 10석이면 10석, 5석이면 5석 골고루 다 나눠 주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인구 비례로 한다든가 의석 비례로 한다든가, 인구 비례로 해야 되겠지요. 나눠서 배분하는 방법,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을 만들더라도 좀 더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 필요는 있다……

지금 인구 비례로만 따진다면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10석밖에 비례가 안 되잖아요, 100석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광주·전북·전남·제주

는 11석밖에 안 나오고 대전·세종·충북·충남도 10석 정도밖에 안 나와요, 지금 인구 비례로 나눈다면, 100석이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5석을 기본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을 비례로 나눈다든가 이런 틀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물론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표의 등가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그다음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다 플러스해서 하나의 보정의석제를 도입하는 것, 보정의석제가 아마 초과의석 수량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선관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런데 초과의석과 보정…… 초과의석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고요. 초과의석에 대해서 또다시 비례 원칙을 강조해서 보정의석을 하는 부분이 독일식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것은 의석수가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백재현 위원** 그렇게 해서 늘어나면 얼마 정도 늘어난다고 시뮬레이션 해 본 적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지는 않았습시다.

○**백재현 위원**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대표성을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통계를 비교해 보면 불란서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 1인당 16만 6000명 정도 되잖아요? 독일은 13만 6000명, 프랑스는 11만 3000명, 영국은 9만 6000명, 이탈리아는 6만 4000명 정도 돼요, 1인당 인구수가. 우리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원수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국민들의 동의만 얻을 수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가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늘어난, 비례성을 대표하기 위해서 보정의석제를 과감히 도입하는 것도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의석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 회의에서도 말씀드

렸지만 국민감정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대의명분을 가졌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지금 제도, 선관위가 내놓은 안은 전반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당히 많은 현실성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실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안들, 꾸준히 국민들을 설득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박민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식 위원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총장님, 아무래도 선관위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 석패율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이든 일본이든 상세한 운용 실태, 법적인 근거 또 독일이나 일본에서의 찬반의 논거 이런 것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이든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우선 저조차도 디테일로 들어가면 혼동스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정개특위 때까지 석패율 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독일이나 일본에서의 운용 실태 또 각종 논거 같은 것을 상세하게 주시면 향후 회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자료를 준비할 것이고요. 오히려 단원제든 양원제든 비례대표를 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이 전국 비례 명부를 하기보다는 권역별 비례를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일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민식 위원 하여튼 그 두 나라의 제도의 운영 그것을 다음에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박민식 위원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위원입니

다.

사실상 정개특위 처음 회의인데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가볍게 몇 가지만 터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선관위에서 제출한 이 안은 언제 공식적으로 제출됐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2월 25일에 제출했습니다.

○박민식 위원 그러면 현재의 결정 이후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박민식 위원 현재 결정 전에 제출됐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결정 이후라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게 자연스럽게 매치가 잘 안 되는데, 권역별 비례대표다 이런 게.

(이병석 위원장, 김태년 간사와 사회교대)

딱 하나 이해할 만한 것은 현재의 결정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변화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제도도 이 통에 한번 바꿀 수 있는 호기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무적으로는 선관위에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논리적으로는 현재 결정하고 지금 이런 제도하고저는 어떻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다, 지금 선관위에서 내놓은 안은 정확하게 말하면 권역별 비례대표 플러스 석패율이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박민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본래의 취지대로 작용을 하려면 어쨌든 의원 정수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런데……

○박민식 위원 아니, 의원 정수가 늘어나야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의지의 문제이고요.

○박민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제도 도입하려는 취지는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비례대표 정수를 늘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는 것은……

○박민식 위원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는 게 지금 현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리든지 아니면

지역구 숫자를 줄여서 늘리든지 두 가지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박민식 위원 제 말의 요지는 의원 정수를 하여튼 늘려야 지금 선관위에서 말하는 권역별 비례대표다, 플러스한 석패율이다, 그런 안이 본래의 취지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맞습니다.

○박민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꾸 이거 따로따로 그냥 권역별 비례대표다, 석패율이 어떤 제도다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 보면 교수님들 또 여러 학자들, 전문가들이 그 제도만 놓고 설명하는데 의원 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 까놓고 심상정 위원님처럼 솔직하게 그 부분을 먼저 제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제도만 독립적으로 좋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경상도 말로 용만 쓰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총장님은 그 부분은 국민들 설득을 국회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벌써 2년 지났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정치라는 영역에 발을 디디면서 엄청난 박수를 뿜 때문에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국회의원 숫자 200명으로 확 줄이자’ 이게 국민들한테 가장 큰 임팩트를 준 거예요.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심상정 위원님의 정치 개혁에 대한 진정성은 제가 충분히 존중합니다마는 지금 얼마나 우리 국민들 쉽게 말하면 먹고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 직장 구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있는 숫자도 지금 다 줄이고 구조조정이 뭐다 하는데 국회의원들 정치개혁특위 한다고 시작하자마자 ‘숫자 늘렸다’, 말은 설득의 문제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만큼 고민을 우리가 했냐고요?

국민들 설득하려면 지난 몇 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정개특위 하자마자 ‘숫자 늘릴 수밖에 없다’, ‘OECD 국가 수준에 미달한다’ 이것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의 안이라는 게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첫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할 수 밖에 없고.

두 번째, 제가 18대부터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른바 석패율 제도라는 게 말은 ‘석패’, ‘아쉽게 패했다’, 말은 그럴싸하지요.

제 이야기를 굳이 안 하겠습니다. 이게 경실련에서 2012년에 낸 자료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석패율 제도 말도 안 되는 제도다라고 하면서 일곱 가지 이유를 달아놨어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체제 제일 헌법상의 기본원리가 국민주권주의인데, 국민주권주의가 뭐니까? 국민이 그 대표를 자기 손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해서 A라는 후보를 당선시키고 B라는 후보를 낙선시키는 그것은 오로지 국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석패율이 뭐니까? 국민이 A를 선택하고 B는 낙선시켰어요. 석패율은 권력 있는 사람이 국민이 낙선시킨 B를 다시 구제해서 국회의원 만들어 주자, 이게 한마디로 석패율이에요. 다른 이유다 거두절미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정면으로 이게 배치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족보에 있는 제도입니까? 일본에 있다고요? 일본이 그러니까 정치가 금권정치이고 보스정치이지 않습니까?

독일? 독일은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지역구 숫자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맞습니다.

○박민식 위원 그런 데서 말하는 것이지 그런 기본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석패율제도 이거 지역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완화한다는데 여기 지금 지역주의에 효과가 몇 개 있어요?

시뮬레이션 해 보셨습니까? 한 석, 두 석이에요. 차라리 그러려면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본질적인 해소 방법은 선거제도입니다. 소선거구제를 할 것인지 중대선거구제도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공법으로 나아가야지 어디 족보도 없고 국적도 없는 이런 석패율제도 띄우고 와 가지고 국민들…… 이것은 우리 헌법에 직접 위반사항입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총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위원님들 다 들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박민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태 위원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볼 때 정치가 제 기능을 할 때 그 공동체는 전진을 해 왔고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 공동체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하고 해 왔던 것 아닙니까?

87년 시민혁명 이후 지금의 헌정체제, 직선제 대통령제라는 것하고 이 소선거구제를, 국회의원은 지금 7대에 걸쳐서 이렇게 해 왔는데, 제가 처음에 정치에 입문한 것은 14대 때인데 14대 때만 해도 국회가 이렇게까지 국민의 불신을 받지는 않았더랬어요. 그런데 대가 거듭 될수록 정치 불신은 더 심화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물갈이 하라고 하는 요구는 엄청났고, 아마 우리나라만큼 국회의원 물갈이 많이 하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17대 때는 62.5%가 초선이었고 18대 44.4%, 이번 19대에도 49.7, 50%가 계속 초선이에요.

그리고 물갈이 한다고 그래서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미지도 괜찮고 사람은 무척 많이 바뀌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더 신뢰를 줘야 되는데 정반대로 잦단 말이지요.

결국은 이것은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여러 전문가들, 학계나 이런 데서 이런 제도 개선책으로 그동안 막 논의되어 온 것을 이번에 선관위원회가 상당히 획기적인 제안을, 의견을 내주신 것 같아요, 권역별 비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래서 저는 아주 선관위의 이번의 용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다만 선관위가 차마 늘리자 소리는 못 해 가지고 권역별 비례를 하려니 200석으로 줄여야 된다 때문에 지금 오늘 국회에서 많이 곤욕을 치르시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산업화 과정에서 거의 공동화된 농

어촌, 그렇지 않아도 2 대 1 때문에 죽을 판에 지역구를 200으로 줄인다는 것은 주로 피해가 그 쪽 농어촌, 중소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꾸 늘리자 소리는 오늘 차마 못 하고 국민을 설득해서, 결국은 총장님이 좌우간 잘 설득해 가지고 늘려 보라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틀린 것 아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유인태 위원 그것은 OECD 그것은 OECD 국가 1억 넘는 세 나라 빼고……

OECD 국가 그것으로도 학자마다 틀리데? 어떤 데서는 한 380 몇 석이 적정선이다, 저서들 보면 360석이 적정선이다 여러 설이 있던데 우리도 그래요.

해방된 후 제헌국회 200명 할 때 인구가 2000만 명이었어요. 4대 국회 때 2100만 명일 때 233명이었어요. 그때는 평균 9만이 안 돼요, 팔만몇 천에 하나였다고.

그런데 지금 5000만이라고 그러면 사실 이 인구비례로 따져서도 제헌국회 이래 의석수로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늘릴 필요는 있는데 우리 심상정 위원 빼고는 다들 겁이 나서 욕먹을까 봐 이 말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것은 어떤 국민적 동의 과정 또 우리 정개특위가 앞으로 전문가들과 이 문제도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좀 좋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의석을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저는 한 12년 전에, 2003년에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그때 신한국당하고 또 선거법 협상을 한번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석을 늘리지 않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 선관위에서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에 비해서는 훨씬 사소한 문제이기도 한데 석패율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은데 이것 밖에 시민사회나 이런 쪽에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누가 그런 말 하던데 ‘중진이 살아남는 것 아니냐.’ 이게 석패율이 적용되는 것은 가령 자기 당의 취약 지역에만 적용되는……

가령 20% 이상의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데는 석패율이 적용 안 되니까 자기 지역의 아주 취약…… 그 취약 지역에 언제 당선자가 있어 가지

고, 말하자면 한 번도 당선 못 되고 여러 번 떨어진 친구가 들어오는 게 석패율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유인태 위원 무슨 중진한테 유리하고…… 뭐 이런 것은 도대체 석패율제의 취지 자체도 모르고 하는 비판들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난무하다.

그리고 또 하나, 권역별 비례가 되면 굳이 석패율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만 설혹 취약 지역에서는 이제 해가 갈수록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후보를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나마…… 가령 우리 취약 지역인 대구 여기에서 1등으로 떨어진 사람은 원내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내가 당선은 못 돼도 1등으로 떨어질 자신은 있다 이래 가지고 아마…… 그것 마찬가지로 상대 당에서도 자기 취약 지역의 좋은 후보들이 아마 많이 참여를 하는 이런 효과들도 저는……

그런 것들을 장점들을 너무 간과하고 또 취지도 잘 몰라 가지고 해 봤자, 이것 비례대표에서 석패율로 적용될 숫자라고 하는 것은 많아야 5석 정도 늘린다고 가정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유권자들도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찍은 후보가 지역구에서 절대 불리하기 때문에 낙선이 되더라도 권역별 비례에 의해서 또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열세 지역에서도 소신 있는 투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인태 위원 그리고 하여튼 7번에 걸친 선거를 죽 치르면서 결국 선거를 규정하는 것은 뭐 인정하든 말든 지역주의인데 그것 그 속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던 정당은 정주영 회장의 통일국민당이 14대에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 한번 해 봤고, 나머지 또 다른 지역 김종필 총재가 했던 당은 부침은 있었습시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역 정당…… 그러니까 지역 기반이 없는 정당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다만 현재가 또 위헌 판결 때문에 17대에 1인 2표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민주노동당 하고 18대 때 친박연대가 비례대표 하고 해서 교섭단체까지는 못 돼도 의미 있는 의석을 얻었던

것, 그 외에는 지역 기반이 없이 지역구 선거에서 거의 생존이 어려웠던 게 지금 우리의 그동안에 7번에 걸친 선거제도인데……

그래서 우리 정치가 우리 선거제도가 이번에 당리당략, 또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저는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보고, 그것은 어쨌든 이번에 제도 개혁을 통하지 않고는 이런 제도인데, 암만 못해도 300명 지금 다물같이해서 가장 참신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군자를 데려와 봤자 아마 불신은 더 심해질 거다.

가령 국민통합을 하는 기능, 갈등을 조절하는 기능 이것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재원의 배분처럼? 그 역할을 아무리 성인군자들 갖다가 300명 채워도 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치가 복원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정개특위와 선관위가 같이 지혜를 잘 저거 하면서, 다른 문제는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유인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위원 사천·남해·하동의 여상규입니다.

정치개혁 관련된 과제들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마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선거구 획정 문제지요, 현재 판결이 있고 난 뒤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해보입니다.

○여상규 위원 그런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개특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대중의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국회의원이 관여하면 안 되겠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독립기구에서 획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그런 독립기구를 두어야 된다는 확률이 저는 꽤 높다고 봐요. 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 그런데 선관위나 선관위 산하 기구가 선거구 획정을 한다면 선관위에서 이미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이런 독자 의견을 법률안으

로 발의하는 것을 뭐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구성을 한다면 국회에서 또 사전에……

○여상규 위원 자, 지금 국회의원은 관여해서는 안 되고 독립된 기구에 선거구 획정을 백지위임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완전히 획정을 하게 될 텐데 선관위가 이런 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안을 안 상태에서 선관위에 선거구 획정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런데 이제 권역별 비례로 할 거냐, 기존의 소선거구제로 갈 거냐, 아니면 중선거구제나 다른 제도를 결합할 거냐 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하든지 그 전제로서 국회가 또 그것을 정해서 위임을 해 주는 방법이 아마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상규 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선거구 획정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서 함부로 의견을 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그런…… 아예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그리고 지금 선관위에서 낸 안을 보면 현재의 판결, 2 대 1 인구편차 기준을 지키라는 그 안에 굉장히 충실한 것 같아요.

2 대 1 인구편차를 지켜야 된다, 이게 절대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현재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이해된다는 뜻입니다.

○여상규 위원 자, 우리 헌법에는 123조에 농어촌 등 낙후지역 균형발전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여상규 위원 선거구 획정을 획일적으로 2 대 1 기준에 의해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농어촌 선거구는 많이 줄어들지요? 농어민들의 의견은 국정에 반영될 기회가 작아질 테고요, 그렇지요?

지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 대 1 현재 판결 기준에 따르면 농어촌 의석

수가 몇 석에서 몇 석으로 줄어들니까, 이것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농어촌 의석수 전체에서 몇 석으로 줄어드느냐, 지금 현재의 의석에서……

○여상규 위원 이 현재의 기준에 미달되는 농어촌 선거구가 몇 개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24개 정도……

○여상규 위원 24개나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여상규 위원 산술적으로 끈이끈대로 획정한다면 24개의 농어촌 선거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선관위는 말이지요, 지역구 244석을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 이런 안도 냈어요. 어떻게 줄일 거예요? 이것 줄여도 현재 판결 기준을 적용한다면 줄어드는 농어촌 의석수는 더 많아질 거란 말이야.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자고 했는데요. 그 비례대표도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런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비례대표안이라고 보여져요.

말하자면 여기에도 인구가 중점이 된다 그러면 그 비례대표 중에 각 권역별로 대도시 지역도 있을 테고 농어촌 지역도 있을 거란 말이야. 농어촌 지역 출신들이 몇 명이나 비례대표에 들어가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인구편차 기준을 지키다면? 결국 선관위안은 농어촌을 죽이자는 안이란 말이야, 현재 판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가뜰이나 줄어드는 농어촌 의석수를 더 줄어든게 만들자 이게 지금 선관위안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민들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공정한 제3의 독립기구가 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컨센서스도 있지만은 낙후된 농어촌 선거구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현재 판결 2 대 1 기준이 절대선이냐고 물었는데 절대선 아니에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절대선이에요.

대도시 지역하고 농어촌 지역은 엄연히 다른데 그것을 같은 기준으로 잣대로 들이밀어 가지고



획정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선이 됩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는 안을 내놓는 게 선관위가 할 일이지 이렇게 말이야, 충실하게…… 어디 선거구 획정하고 국회의원 숫자 정리하는 게 산술적으로 무슨 공식에 의해서 그대로 나오는 그런 답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 제안을 하는데요.

권역별 비례대표를 주장하시려면 농어촌 출신을 비례대표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같은 농어촌끼리는 2 대 1 인구 기준을 지키고, 같은 도시끼리는 2 대 1 기준을 지키지만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도시와 농어촌 그 비율을 2 대 1로 꼭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3 대 1로 올라요.

같은 헌법 123조에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균형 발전 시키라는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는 규정까지 있는데 그런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말이야, 이게 무슨 절대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수치라고 2 대 1 기준을 금과옥조처럼 여겨 가지고 이런 안을 낸단 말이예요?

선관위가 앞으로 선거구 획정을 맡는다 하면 이런 면에서 정의를 찾아야 돼.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여상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제가 굳이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비례대표를 어떤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정당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대표성이 좀 강조될 수 있도록, 명부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여상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문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년 간사, 이병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문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고 답변이 다 돼서 대충 오늘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을 나눈 것 같은데요.

지금 선관위에서 ‘지역주의 완화 및 유권자 의사에 충실한 반영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허용,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하는, 이 두 부분의 안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의 충실한 반영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 두 개 말고 다른 부분도, 다른 선거제도도 다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지금 이게 우리 형편에 제일 맞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신 건가요, 중선거구제도 다 검토하시고 기타 등등 검토 하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과거에 그런 부분들도 또 국회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정문헌 위원 그러니까 어찌 얘기하면 지금 여상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에서 2 대 1 판결이 나오니까 그냥 그것을 기준으로만 놓고, 그냥 그것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나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냥 하셨다는 얘기에요, 다른 것은 검토 안 하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권역별 비례만 놓고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저희가 99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정문헌 위원 예, 알고 있고요. 이것저것 제도가 죽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이것이 가장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의 충실한 반영을 위한 선거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제안하신 거냐고요, 선관위 입장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저희는 그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정문헌 위원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아까 유인태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간에 총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 국민을 좀 잘 설득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장점 부분은 저희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태 위원께서 ‘국회의원 정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국회에 던져 주고 국회의원들더러 잘 설득해서 잘해보자는 얘기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더니 총장께

서 ‘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게 정확하게 답변하신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는 그 뒤에 말씀드리기가……

○정문헌 위원 이게 지금 좀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총장께서 계속 권역별 비례대표 말씀을 하시는데, 권역별 비례대표 말씀을 하실 때 초과 의석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제도다 싶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 정서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국민이 받쳐주지 않으면 제도를 개혁해도 그 제도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 정수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찌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만큼 우리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국민적인 동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인데 보고서에 숫자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한 자도 안 써 봤어요.

그러니까 마치 진짜 선관위에서는 이 제도, 뭐 좋은 제도인 것은 저도 압니다. 이것을 마치 해보고 싶어 안달이 나서 앞으로 던지면서 여기서 문제되는 국회의원 정수 문제 같은 것은 바깥으로 안 드러내고 안으로 숨기고 있다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니에요. 선관위가 하고 싶은데, 제도도 괜찮은 것 같은데 국회에서 국민 좀 설득시켜 주라, 그런 것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희……

○정문헌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앞으로 우리 정개특위에서 모든, 여러 가지 제도를 다 열어 놓고 논의를 할 텐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권역별 비례대표가 표의 등가성도 더 확실시 할 수 있고 지역감정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에 ‘농어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 난리 났다’, 이것도 현실이거든요. 이것도 현실인데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의원정수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마치 이렇게 하고 싶은 것 프로모션(promotion) 하는 식으로 하고 의원들한테 던져 놓는 식으로 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활발

하게 하는 데 저해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보고도 다 열어 놓고 하고 설득시킬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서도 설득을,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먼저 나가서 설득해야겠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끼리도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고를 해 줄 때……

제도라는 게 시행되면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행되기 이전에 어떤어떤 부분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어떤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석패율, 동시 입후보제 문제지요. 동시 입후보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조금 일본 제도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일부 선거전담 전공학자들은 일본식 석패율 제도는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사실 낙선한 의원 구제하기 위한 계과 나눠 먹기의 산물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총장께서는 지금 선관위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부분은 각 시도 전체 지역구 수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당선인이 당선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막으셨다, 이렇게 설명을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후보자가 어떤 순위에서 몇 명의 후보자와 함께 동시 입후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개별 정당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라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의 정치 현실에서 좀 다른 결과, 어찌 보면 일본 석패율이란 차이를 두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과 정치나 보수 정치가, 우리는 지금 거기서부터 많이 벗어나서 민주적인 정치를 구현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상태인데 되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러니까 일본 제도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동일 순번에 1명만 공천을 할 수도 있고 2명을 공천할 수 있고 그것조차도 정당이 자율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의무적으로 2명 이상을, 지역구에 나온 후보를 비례대표에 넣을 경우에는 2명 이상을 동일 순번에 넣어라, 그래서 지역구에서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다수 득표율을 얻은 사람만 한 사람을 당선시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

위적으로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순번에 넣는 일본 제도하고는 다르다, 또 독일 제도하고도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년 위원 경기 성남 수정 출신 김태년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정치관계법을 다뤄야 되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통령중심제 국가와 내각책임제 국가의 의회·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맞는 좋은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제도에는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100% 옳고 어떤 제도는 100%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정치관계법은?

그래서 현재 우리 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보완하는 이런 방향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컨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번에 선관위가 아주 용감하게 제시를 했고 저는 우리 정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제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또 학계나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안이고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수를 독점하는 것을 해소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단원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원제 의회에서 부족한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논의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나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주 디테일에 들어가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기왕에 선관위에서 이 안을 제출했으니까 오늘 제시된 염려들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정개특위가 사실상 첫 회의의를 한 것인데 하나는 대체적으로 의견 일치를

거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우리 정개특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해당사자 아닙니까? 이해당사자가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에 개입하는 것, 이것은 하지 말자, 그렇게 관련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일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어디다 설치할 거냐? 선관위에다 설치할 거냐, 지금처럼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 내에 설치할 거냐, 이런 논의는 더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최소한 의원들이 손대지 않는다, 과거처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 대체적으로 합의가, 의견들이 일치를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4월 국회에서, 정개특위에서 이 법, 이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관련한 법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 선거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선거법 전반에 관련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게,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게, 규정하고 있는 게 포지티브(positive)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라는 것 빼고는 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 사업마다 선거법을 유권해석을 해야 돼요. 선거운동을 하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매 사업마다 선관위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선관위가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중앙선관위의 답변과 지역선관위 답변이 막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유권해석이 많은 법은 완전한 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아예 네거티브(negative)형으로 선거법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선관위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창의적인 선거운동도 가능하고 후보와 유권자 간의 소통도 강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국회 개혁특위 간사를 할 때인데 2013년 6월에 이런 취지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선관위가 제출한 적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태년 위원** 그때 개정안을 냈던가요, 아니면 의견을 냈던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개정 의견을 냈습니다.

○**김태년 위원** 개정 의견을 냈던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태년 위원** 개정안으로, 법률로 낸 것은 아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때 제출했던 선관위의 의견, 이것은 지금도 역시 동일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동일합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차제에 아예 이 선거법 개정, 이 포지티브형 선거법을 네거티브형으로 고치는 것, 이것은 선관위도 의견을 같이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같이 하는데요, 단지 거기에 접근하는 방식은 후보나 정당 입장에서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비용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갖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권자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난번 낸 개정 의견에 보게 되면 후보자나 정당 쪽 입장에서 불편한 것은 많이 고려를 했는데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좀 덜 된 것으로……

○**김태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2013년 6월 이근데,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인데, 여기에다가 방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조금 덧붙여서, 덧붙여서 조금 더 다듬어서 안을 하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러면서도 저희는 또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무한정 자유롭게 가는 것은 유권자들도 안 된다는 거지요.

○**김태년 위원** 아,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컨대 몸으로 하는 운동은 가능하지만 광고를 하거나 무슨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까지 허용한다면 아마…… 미국이 가장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금권 정치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김태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유권해석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동의합니다.

○**김태년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것 알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선거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매우 불안정한 선거법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태년 위원** 차제에 이것을 이번 정개특위에 다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의견을, 정리된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태년 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여서 말씀드리기 그러니다마는 아까 ‘석패율제가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총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석패율 제도를 취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 뭐 남의 나라 제도를 저희가 절대적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 나라들도 이미 하고 있고 또 전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정당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 명부 순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제시한 것은 어찌 보면 유권자에게 선택의, 또 하나의 기준을 넘겨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당이 정한 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다수 기표를 한 그 의원에게 당선 기수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꼭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태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김태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추가질의하실 분을 사전에 알아보았더니 새누리당에서는 추가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교섭단체 한 분 해서 여섯 분이 추가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질의 여섯 분에게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은 여야 두 분이 합의를 안 했는데, 5분씩?

○**김태년 위원** 예, 5분……

○정문헌 위원 우리는 안 하나까 조금 줄이시지요.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줄여서 5분……

○위원장 이병석 그래요?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는 안 하시는 것 같고 새정연 위원님들과 비교섭단체……

○김태년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위원장 이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들과 정의당의 심상정 위원님 여섯 분이 추가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까.

추가질의시간은 합의했습니까?

○백재현 위원 5분이래요.

○위원장 이병석 그래요, 그래도 절차는 거쳐야지……

어떻게, 5분으로?

○김태년 위원 예.

○위원장 이병석 그래요.

추가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까.

먼저 김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식 위원 방금 전에 김태년 위원이 얘기했던 선거법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변경하자는 것은 2004년도에도 검토하다가 안 된 점이 있는데 대체로 네거티브로 할 경우에 돈 드는 문제나 조직 동원의 문제 이 부분을 규제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풀고 특히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나 참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꿨을 때 검토해야 할 것에 대해서 자료를 만드셔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물을게요.

아까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분리해서 각각 2 대 1로 적용하는 형태로 현재 결정을 적용하자, 이거 이렇게 하면 위헌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희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다. 그리고 현재의 그 결정 취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2 대 1을 넘는 것은 지형·지세 뭐 지역적……

○김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시 지역 유권자의 2 대 1 기준과 농촌 지역 유권자의 2 대 1 기준을 분리시켜 적용을 해서 농촌 거주 유권자와 도시 지역 거주자를 분리해서 차별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100% 위헌일 뿐만 아니라 세계 게리멘더링 역사에 최악의 게리멘더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안이

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한 우려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어촌 지역구의 축소를 막기 위해서 인구 하한선을 낮추어 잡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1만을 하한선으로 잡으면, 원칙대로 하면 22만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인구 하한선을 낮게 잡으면 낮게 잡을수록 오히려 지역구 선거구 숫자가 상한선이 적어지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있어서 오히려 선거구가, 농촌 지역의 선거구를 지켜 주기 위해서 하한선을 낮추면 오히려 도시 지역의 선거구가 급팽창하게 되어 있는 구조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맞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래서 만약에 현재와 같이 11만의 선거구, 지역구를 지켜 주기 위해서 11만의 하한선을 유지하게 되면 오히려 도시 지역의 선거구 지역구의원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전체 의원 숫자에 있어서 도시 지역 의원 숫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럴 수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런 점에서 지금 선관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얘기하는 게 농촌 지역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지켜 주기 위해서 하한선을 낮추게 되면 오히려 도시 지역의 지역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풀지 말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소위 표의 증가성이 우선화 됐을 때 나타나는 지역대표성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보완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비례대표를 채택하는 나라들이 전국 명부를 쓰지 않고 권역도 아니고,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 우리식으로 하면 시도별·주별로 명부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기식 위원 역시나 그 나라도 표의 증가성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생겨나는 지역 대표성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그런 지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한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런 취

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자, 그런 점을 좀 명확하게 우리 의원님들이나 국민들께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게 의도와는 달리 농촌 지역구 지켜 주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농촌 지역의 전체 국회 의석에 있어서의 대표성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한선을 낮추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지역구를 지켜 주겠다는 발상은 그 발상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를 할 경우에 이게 시도별로 안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선관위가 예시한 방향으로 경기도·강원도·인천을 묶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마 권역별 경선 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출신 권역별 비례대표가 하나도 안 나올 것입니다. 호남하고 제주도를 묶어서 그렇게 권역을 하게 되면 인구 구조상 제주도 출신이 안 나오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갈 경우에, 시도별로 하면 너무 쪼개지니까 18개 시도가 있고 더구나 세종시는 인구가 적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권역 내에서 시도 단위별로는 배정된 것에 최소한 몇 석 이상은 보장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권역 내에서의 지역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보완장치를 가져야 되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위원** 더군다나 그 안에서도 도시 지역, 한 도 내에서도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권역별 비례로 할 때 시도별로 안배할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과 농촌에 있어서 최소한 농촌 지역을 어느 정도 비율로는 반영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가 그 의도한 바의 취지를 정확히 살릴 수 있도록 세부적인 안을 만드셔야 이게 국민적으로 설득이 가능하고 의원들도 동의 가능하 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정 위원** 위원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뭐 현재 판결을 안 지켜도 됩니까,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현재 판결을 금과옥조로 생각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뜻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주권주의는 우리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핵심이 모든 표는 평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대일에 가깝게 지금 다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토대 위에 농촌의 대표성, 지역의 대표성, 세대의 대표성이 보완되는 선거 제도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면서 농촌 대표성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저는 헌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위해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 농촌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농촌 지역의 어떤 대표성이라든지…… 농촌만 있는 게 아니지요, 뭐 노동자도 있고 청년도 있고 세대도 있고 이런 어떤 다양한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해야지 2 대 1 판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격하게 어떤 계층 대표성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표의 등가성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나머지 지역이나 세대 대표성을 확대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모아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의석수 확대하는 것이 국민 여론이 나쁩니다. 그것은 뭐 동의를 하는데, 국민 여론이 나쁜 것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중앙선거위가 잘못된 게 아니지요. 우리 국회에서 우리 정치권이 성찰하고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것인데 이런 국민 불신을 핑계로 잘못된 제도에 의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서 안 된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행 제도가 승자독식 제도로서 많은 국민들의 표의 등가성을 현저히 해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제도를 국민의 불신을 핑계 삼아서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것은 저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저는 용기 있게 잘…… 국회의 자기 머리 잘 깎지 못하고 자기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서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고 민심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왜곡시켜 왔던 선거 제도를 손을 안 댄 것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다는 것을 저는 중앙선거위가 대신 이야기한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정치 불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불신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제도, 그 기득권은 계속 유지하겠다 그것은 저는 정치권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놓은 안이 우리가 정치를 잘 못했으니까 OECD 기준으로 볼 때 평균 이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 같은 것 대폭 축소하자 그리고 국민들께도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대표성은 늘리고 그다음에 특권은 줄이는 것이라는 것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의석수 확대, 360석 확대를 발표한 날 5만 6000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그중에 95% 이상이 다 비판하는, 야단치는 글이었습니다만 일주일 후에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국민 감정을 잘 설득해 가야 된다고 총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선관위의 역할이 있고 국회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선관위의 역할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들의 왜곡된 표의 등가성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투표민심에 비례하지 않고 자기 정당의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한쪽에서는 가져가고 한쪽에서는 빼앗기는 이런 잘못된, 왜곡된 선거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설명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표성이 잘 반영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국회의원 한 명당 몇 명의 유권자가 대변되는 게 좋은지 통계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고 그동안의 사표 발생으로 인한 표의 왜곡이 어떤 상황인지도 설명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해야 될 일,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국민 불신에 대해서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 의원보다 더 누리고 있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내놓고 이렇게 대표성을 확대해서 '이제는 국회에서도 비정규직 목소리도 반영되고 또 정말 사회적 약자 목소리도 반영시키겠다, 그러니까 늘려 달라' 하면 저는 국민들이 다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 못 해 가지고 '꼴 보기 싫다, 너 나가

라' 할 때 그게 진짜 나가라는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서 저는……

30초만 더 말씀드릴게요, 30초만.

○**위원장 이병석** 예, 그래요.

○**심상정 위원** 국민들의 문제 제기를 제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개혁하는 그런 정성으로 국민들에게 답을 해야지 국민들의 불신을 핑계 삼아서 오히려 잘못된 제도를 더 고착화하고 기득권에 더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지금 특히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걱정들은 사실은 공감은 하면서도 특별한 대안을 갖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외국의 사례들을 이렇게 즉 보시면서 외국의 경우에도 결국은 선거구나 또 이런 선거에 있어서 대개의 경우 어쨌든 인구 비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인구 비례 말고 지역의 균형성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미국의 경우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고 거기에 상원들의 경우에는 인구와 관계없이 주에서 2명씩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국의 역사적인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는 나라가 먼저 생기고 주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도 하원의 경우에는……

○**김상희 위원** 전적으로 미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일률적으로 인구 비율대로 다 잘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김상희 위원** 그런데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어느 나라도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를 한다 하더라도, 권역별 명부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권역별로 의석수가 인구

비례를 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상희 위원 인구 비례를 하고 또 그 권역에서 아무래도 도시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좀 유리하겠지요.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농촌 지역의 이런 불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아까 총장님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전에 여상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비례대표를 어떤 사람으로 공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당의 몫이거든요.

○김상희 위원 그것은 정당의 몫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당에서 어떻게 공천하느냐 하는 것이지 그것을 담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현저하게 지역의 이런 균형, 농촌 지역과 도시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총장님께서 어떤 대안은 없는지,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선거법 개정의 또 중요한 부분은 정당정치를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고 하는,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당 부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전적으로 환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와 관련해서 저는 이게 지금 정당의 정당정치 활성화와 관련해서 총장께서는 이 부분을 정당정치 활성화의 공정성…… 민주성 강화라고 그러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상희 위원 ‘민주성 강화를 위한 국민경선 실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픈 프라이머리가, 사실은 이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의 민주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상희 위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천해야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공천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정당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금 정당의 민주

성 강화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저희가 완전국민경선제도를 내놓은 것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김상희 위원 법적인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이것이 말하자면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한다든가 정당의 민주성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완전국민경선제로 가더라도 정당의 몫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정당에서 지역에 나갈 후보가 10명이 왔다고 해서 10명을 다 국민경선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2명이나 3명으로 압축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국민경선에 내보내는 것은 또 정당의 몫이기 때문에 여전히 정당의 민주주의와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희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선관위의 개정의견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를 제안하신 것이라든가 지구당 부활이라든가 전체적인 이런 기초와 이 오픈 프라이머리하고는 굉장히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는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전히 권역별 비례를 하더라도 우리가 소선거구제를, 3분의 2는 소선거구제로 가져가자라는 것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일방적으로 영남 지역이나 호남 지역에서는 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면 그 사람이 곧 당선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유권자들에게도 국회의원에 대한 선택권을 주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전체가 다 같이 동시에 할 때 가능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상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정당이 할 경우에 이것이 역 선택 이라든가 굉장히 왜곡된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물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서울이나 경기 이런 데, 여야 간에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우 열을 가리기 힘든 지역에서는 역 선택의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당에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조차도 정당의 선택의 문제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의 경우에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서 여전히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형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하는 정당이 본 선거에서 유리하더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적인 반증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 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다 보면 의원 정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은 국민적 여론의 문제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충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 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번 선관위 제안안은 이것이 마 지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선거 주무부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고 제가 보기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어떤 노하우가 가장 많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희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번 제안안이 마지막입니까, 아 니면 향후에도 더 보충적인 의견, 그런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이번 국

회에서는 이번 개정 의견을 마지막으로 하고 다 만 특위 소위 활동과정에서 추가적인 의견이 필 요할 때는 그 현장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만약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앙 선관위 산하로 간다면, 구성 방법은 뭐 여러 방 법이 있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가 갖고 있는 기능상 성격상 이번 제안안에 대 한 보충적 의견을 좀 더 뭐랄까요, 원활하게 개 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희는 여기에서 단연코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활동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에서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 립니다.

○**박범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죽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우리 헌법이 지금 현재의 결정에서 예시를 했 던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것 은 평등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의 중 요한 원리이기는 하지만 꼭 그것만이 다 있는 것 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상의 경제조항들을 보면 지역균형발 전 또 농촌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시책의 수립 이런 것들을 다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헌 법재판소의 결정은 확실히 수도권에 상당한 혜택 이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박범계 위원** 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 간의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생각을 평소에 해 온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농촌 지역 대표성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오전에 박영선 위원님 또 백재현 위원님 또 방금 전에 김상희 위원님, 여 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또 여당 위원님들도 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역 대표라는 것을 순 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헌법적 이념이다라는 생 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완전한 인구 비례 를 예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3 대 1로 되어 있 는 편차를 2 대 1로 줄이라는 제시를 지금 한 겁 니다.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의 중앙선관위 안은 완 전한 인구 비례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은 대단히 이론적으로는 완성된 산물이기는 하지만 현실성과 헌법의 다른 가치와 이념들을 다소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경청할만한 견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박범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총장님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박영선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똑같이 기본적으로 우선 각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우선배분을 하고 나머지를 어떤 표의 등가성, 인구 비례로 나누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표의 등가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 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저희 지역의 여러 정치학자들과 제가, 연구 논의 결과인데요, 아직은 좀 선부르기는 합니다만. 지금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역대표적 사회적대표제로 좀 보정할 필요가 있다……

아까 백재현 위원님 말씀 중에 보정의석제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완전한 인구 비례에 의하지 않고 그중에 절반은 기본적으로 권역별 혹은 지역별로 똑같이 의석수를 나누고 나머지 50% 정도를 인구 비례로 하면 이번 헌법재판소가 얘기했던 2 대 1 편차 그러한 정신에도 훼손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절반 정도를 지역대표 또 직능대표 또 직능외대표로 다양하게 사회적대표제를 좀 가미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계적으로 인구 비례에 의한 권역별 비례대표가 되면 자칫하면 영호남이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보지요.

그런데 과연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영호남 의원들이, 오랜만에 이것 참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내놓은 중앙선관위 안을 과연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시한 안을 완성되고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중앙선관위 안으로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대표 혹은 사회적대표 부분을 기본적으로 할당을 하고 나머지 50%를 인구 비례로 보정을 하는 이런 방식도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권고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앞으로 소위에서 그러저러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또 그리고 시기가 기한이 좀 촉박하기는 하지만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국민 설득을 하는 그런 작업을 병행한다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구요.

○**박범계 위원** 이왕에 칼을 빼셨으니까 선거 주무부서로서 권위를 갖고 기운차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재현 위원**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제도와 관련돼서 등가성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투표율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19세로 되어 있는 연령을 18세로 늘려서, 지금 대학교 1학년의 75%가 투표를 못 하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대학교 1학년 애들의 75%가 투표를 못 해요, 25%만이 하고, 지금 현재.

그런데 만약에 18세로 낮추면 고등학생들이 한 25% 투표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이것도 도입해야 하고……

의무투표제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워낙 투표율이 낮으니까, 우리도 29일 날 보궐선거가 있습니다만 투표율이 걱정되잖아요? 물론 중앙선관위가 그동안에 사전투표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충분치 못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 봤자 60% 선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많은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가성을 놓고 공정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많이 참여하게, 투표를 많이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다는 견지에서 본다면 의무투표제도 도입이라든가 18세로 연령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해 의견이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18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했듯이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무투표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희가 그 비슷한 의견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국민들께서 많은 비난을 하셨는데요. 투표에 참여할 권리도 있지만 포기할 권리도 있는 것이고 정치를 잘해야 투표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비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의무투표제를 도입을 했을 때에 반드시 투표를 하라가 아니고 다른 국가들 경우에 상당수 국가들이 투표소까지는 가라, 그래서 선거인명부에 본인이 여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서명을 하고 기권을 하는 것은 허용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투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국민이 상대적으로 투표를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하고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데에 들어가는 그 시간 낭비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부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것도 한번 국민들에게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형태를, 여론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국민들에게. 그래야 투표제도 도입이 안 되더라도 투표율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도 솔직하게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인센티브제도, 투표를 했을 때 제재 방안보다는 인센티브를 줘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나왔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 인센티브제도를 했을 때는 더 위험하다는 발상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폐 1만 원짜리 그 가치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했을 때에……

○**백재현 위원** 저도 총장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인센티브제도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투표하는 행위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의무라는 형태로 자꾸 가고 있는데 의무가 아니고 그것은 유권자의 권리이고 우리 국민의 권리다 이런 측면에서 좀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길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동의합니다.

○**백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태 위원** 그쪽에서 안 하고 우리만 하려니까 조금 쪽팔리네요.

(웃음소리)

그런데 할 말은 조금 할게요.

확정위를 아까 총장께서 선관위가 굉장히 공정하고 중립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당 쪽에서는 대개 선관위, 그러니까 독립기구로 해서 국회의원의 영향으로부터 확정위가 자유로운 결정을 하게 하는 것에는 대개 여야 간에 지금 컨센서스 비슷한 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선관위원 아홉 분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지금 대법이나 헌재나 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 이렇게 셋 셋 셋, 사실 아홉 중에 우리 당 추천은 한 분이예요, 선관위원 중에.

그리고 요새 헌재도 그렇고 대법원에 대해서도 편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선관위에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회에, 그게 그렇다고 국회가 어떤 입김을 미치자는 게 아니라, 두는 게 더 좀 안심이다 이런 차원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확정위 소속을 선관위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태 위원** 아니,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아니,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즉 발언 나온 기조만 보더라도 저희가 여당의 편이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까?

○**유인태 위원** 아니, 총장님은 선관위원이시던가, 사무총장이? 9명 중에 안 들어가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안 들어가 겁니다.

○**유인태 위원**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어쨌든 선관위가 그렇다고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유인태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 하나하고……

이번 선관위 안 중에 언론에서 좀 이렇게 상당히 의아스럽게, 개혁 후퇴가 아니냐 하는 게 지구당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야말로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 지구당 후원회 폐지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정개특위 위원님들 중에 우리 정개특위에 17대 이후에 낙선했던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는데 안 해 본 분들은 몰라요. 그것 선거보전금 나오잖아요, 한 1억 가까이, 선거 끝나면. 그것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못 가져요. 다 어디다 기부해야 돼.

○**경대수 위원** 떨어져 봤습니다.

○**유인태 위원** 떨어져 봤어요?

그 돈 하나도 못 가져요. 다 어디다 기부해야 돼, 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것 당선된 사람은 막상 그 돈 없어도 먹고 사는데, 당선됐으니까, 떨어진 사람은 진짜로 그 돈 절박한 돈인데 그것도 못 갖게 해 놓은 게 지금의 이 정치자금법이다, 안 떨어져 본 사람은 지금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4년간 다음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을 했을 때에만 후원회를 구성하지 그 4년 중에 3년 8개월 동안 있잖아요, 누구한테 한 푼도 받으면 불법이야. 그런데 그것 지키는 사람 하나 없어.

대개 4년 놀다 온 사람들 다음에 재산 등록하는 것 보면 재산이 안 줄었어. 4년간 뭐 먹고 살았어? 물론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수입 좋은 사람들은 몰라도 아닌 사람들, 그것 아무도 지금 안 지키는 법이고 지역위원회 사무실도 못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들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회의들 하시잖아요. 그것 다 불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도 안 지키는 법이…… 현재 지역위원회 사무실 못 둔다, 원외위원장은 후원회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는 것 말고는 누구한테서 단 돈 10원…… 뭐 이번에 김영란법 통과 이전에 이미 정치인은 법에 그 이상으로 다 대상이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도 대가성이 있

는 돈이든 없는 돈이든 받으면 다 처벌받게 되어 있었던 말이지요.

그래서 지구당을 부활하면 다시 돈 쓰는 하마가 또 등장하는 것 아니냐인데 그때…… 저도 이 판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만 사실 16대까지는 원래 제헌 이래 우리 선거법에는 돈 못 쓰게 되어 있는데 돈을 다 쓰는 문화였고 정말로 50배 과태료가 생기고 나서 17대 이후는 돈을 지금 쓸 수 없는 풍토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저는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안 지키는 법을 제대로 개혁하는 법안이다, 이번 선관위 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총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권역별 비례를 하는 것이 특정 정당에 유불리할 수 있는데 그 안을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낼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유불리한 것이 아니고 원래 왜곡되어 있는 것을 바로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관위 안이 어떤 유불리를 고려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표의 등가성이나 왜곡 현상이 있었던 것을 바로 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인태 위원** 우리끼리만 떠들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유인태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현안보고를……

○**김기식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이병석** 하나만……

그래요.

○**김기식 위원** 이 논의가요, 그냥 논리가 아니고 차분하게 얘기되면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과 관련해서……

지역구 의석을 지켜 주기 위해서 인구 하한선, 지금 11만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상한선은 무조건 22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2만을 넘는 선거구는 도시 지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분구가 발생하니까 도시 지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농촌 지역구 11만을 해 줘 봐야 현재 농어촌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분구되는 도시 지역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구 하한선 11만을 기준으로 하고 22만으로 상한선을 했을 때 도시 지역의 지역구가 선거구가 몇 개가 늘어나는지 그것을 시물레이션 해서 주시면, 그렇게 될 경우에 전체 지금 지역구 의석에서 농촌 지역이 차지하는 포션(portion)과 도시 지역이 차지하는 포션이 어떻게 변동이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인 시물레이션을 해서 주세요.

그래야 이게, 농촌 지역의 대의성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구를 지켜야 된다는 이게 심정은 이해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논의를 해야 논의가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꼭 좀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좋습니다.

선관위에서 자료 요청한 위원님들의 자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회의 시간을 충분히 예정된 시각을 두고 이전에 자료를 미리미리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소위 구성이 됐기 때문에 소위 구성이 돼서 이 소위가 활동하면서 보다 심층적인 심사가 아마 또 이루어지겠지만 자료 요청에 관해서는 아주 즉각 즉각 특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윙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저도 하나만, 서면질문 저도 넣어 주실래요?

○위원장 이병석 그러면 백재현 위원님의 서면 질의도 추가합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출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관님 오늘 회의

에서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해 가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계류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92건으로서 공직선거법 231건, 정당법 27건, 정치자금법 34건으로 3월 30일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리자면 300건에 가까운 관련 법안이 이제 상정이 될 텐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압축적으로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최대한 이 계류 법안들을 이전 어떤 정개특위와 다르게 심의 의결하는 큰 성과를 함께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 위원(20인)

경대수	김기식	김명연	김상훈
김상희	김운덕	김태년	김희선
민현주	박대동	박민식	박범계
박영선	백재현	신정훈	심상정
여상규	유인태	이병석	정문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전문위원	이창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윙희
선거정책실장	윤석근
법제국장	박세각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5. 3. 19 박인숙·홍문표·이종배·김태원·이한성·이자스민·박민수·황주홍·조원진·서상기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5. 3. 20 원혜영·김성곤·배재정·신정훈·이개호·이학영·장하나·전해철·조정식·황주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 발의)

(2015. 3. 20 원혜영·김기식·김기준·김광진·김성곤·배재정·신정훈·이개호·이목희·장하나·정호준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23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

(2012. 5. 30 김용태·조해진·안효대·정두언·정병국·심재철·이재오·권성동·이군현·김성태·정몽준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2012. 5. 30 박기춘·박완주·최규성·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백재현·이찬열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 발의)

(2012. 6. 7 서병수·김세연·안홍준·유기준·이현승·여상규·노철래·전하진·신성범·유재중·박인숙·유일호·주영순·김종훈·윤명희·김도읍·정의화·서용교·나성린·류지영·김정훈·김현숙·이재균·김재경·정갑윤·이채익·이현재·고희선·이진복·김성찬·현영희·박대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 발의)

(2012. 6. 7 이용섭·한명숙·장병완·김현·안민석·양승조·진성준·박지원·이윤석·홍영표·이언주·임내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2012. 6. 8 박기춘·최규성·김성곤·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정세균·김민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2012. 6. 11 박기춘·김성곤·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백재현·정세균·김민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2. 6. 14 이찬열·안규백·강창일·김우남·박남춘·김재윤·남인순·김진표·부좌현·신장용·이윤석·김경협·우원식·백재현·

정성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 발의)

(2012. 6. 15 박병석·배기운·유대운·도종환·최민희·김진표·김우남·박범계·장병완·김영주·장하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12. 6. 18 정희수·안홍준·한기호·서용교·주영순·이종훈·류지영·김춘진·이명수·이에리사·황진하·김동완·한선교·김상훈·김재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 발의)

(2012. 6. 20 우윤근·최민희·김우남·최동익·김진표·신장용·임내현·김광진·노영민·이춘석·박영선·정성호·주승용·안민석·김영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

(2012. 6. 22 박영선·안규백·전병헌·안민석·주승용·이춘석·김동철·이학영·박주선·우윤근·최재성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 발의)

(2012. 6. 25 김성곤·박민수·오제세·원혜영·김영록·박기춘·홍지만·우윤근·심재권·이춘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

(2012. 6. 28 심재철·이한성·이현재·김장실·박인숙·김성찬·이재영·강은희·이종진·강석호·경대수·이윤석·이에리사·주영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 발의)

(2012. 6. 28 박성호·김태원·강기윤·나성린·김관영·이한성·주호영·민홍철·최민희·유승우·김세연·황영철·김성찬·이종훈·김태흠·박원석·윤영석·전정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 발의)

(2012. 7. 2 원유철·서상기·강기윤·이재영·이한성·이현재·이만우·윤명희·김태원·박성호·김성곤·김영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 발의)

(2012. 7. 2 원혜영 · 배기운 · 김상희 · 진성준 · 오제세 · 조정식 · 김현 · 이석현 · 민병두 · 김용익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2. 7. 3 주승용 · 신장용 · 유은혜 · 노웅래 · 유대운 · 배기운 · 우윤근 · 이상민 · 심재권 · 김우남 · 유기홍 · 정성호 · 최민희 · 박인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 발의)

(2012. 7. 5 이완영 · 유기준 · 이주영 · 최경환 · 주호영 · 강석호 · 김태환 · 안홍준 · 김성태 · 윤영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 발의)

(2012. 7. 5 최재천 · 이종걸 · 홍종학 · 서영교 · 전병헌 · 김영주 · 노웅래 · 유기홍 · 최민희 · 유승희 · 이학영 · 정청래 · 민병두 · 김광진 · 박범계 · 진선미 · 박홍근 · 김현미 · 인재근 · 이미경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 발의)

(2012. 7. 6 박남춘 · 김재윤 · 전병헌 · 진성준 · 박영선 · 이낙연 · 신학용 · 김동철 · 유성엽 · 이춘석 · 유인태 · 전정희 · 김광진 · 안민석 · 정청래 · 최동익 · 서영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

(2012. 7. 6 심재철 · 이한성 · 민홍철 · 최민희 · 박성호 · 이종진 · 김형태 · 김태원 · 정성호 · 윤영석 · 유성엽 · 김춘진 · 박인숙 · 류지영 · 강은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12. 7. 9 정희수 · 김성찬 · 민홍철 · 정성호 · 주호영 · 홍문표 · 주영순 · 송영근 · 이종훈 · 정수성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

(2012. 7. 17 안민석 · 이석현 · 박영선 · 이미경 · 강기정 · 윤관석 · 유기홍 · 노웅래 · 박홍근 · 신장용 · 박범계 · 장하나 · 최민희 · 이원욱 ·

민병두 · 이종걸 · 김재윤 · 서영교 · 전병헌 · 문병호 · 김태년 · 전해철 · 김광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

(2012. 7. 20 김용태 · 한기호 · 윤진식 · 정두언 · 류지영 · 정희수 · 김성태 · 김태원 · 서용교 · 주영순 · 김성찬 · 길정우 · 정성호 · 김학용 · 박덕흠 · 김춘진 · 하태경 · 김성곤 · 김종훈 · 이종진 · 심윤조 · 김재원 · 전정희 · 박완주 · 주호영 · 김동완 · 김형태 · 심학봉 · 신학용 · 김태흠 · 신동우 · 유승민 · 이한성 · 김희선 · 민홍철 · 강은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2012. 7. 23 박기춘 · 김민기 · 이윤석 · 박덕흠 · 홍의락 · 민홍철 · 한명숙 · 이미경 · 박지원 · 최규성 · 주승용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2012. 7. 24 유성엽 · 이춘석 · 김성주 · 김우남 · 강동원 · 김관영 · 박원석 · 전정희 · 김춘진 · 우윤근 · 박인숙 · 김영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2012. 7. 25 유성엽 · 이춘석 · 김성주 · 김우남 · 강동원 · 박원석 · 전정희 · 김춘진 · 우윤근 · 박인숙 · 김영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 발의)

(2012. 7. 26 이목희 · 최규성 · 김현미 · 이미경 · 이석현 · 정성호 · 인재근 · 송호창 · 박완주 · 우원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2012. 7. 27 박기춘 · 김민기 · 이윤석 · 한명숙 · 박지원 · 주승용 · 우원식 · 김성곤 · 임내현 · 이미경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 발의)

(2012. 7. 27 김재윤 · 문병호 · 유대운 · 민홍철 · 안민석 · 박남춘 · 배기운 · 이미경 · 박민수 · 김성곤 · 김장실 · 김윤덕 · 김우남 · 임내현 · 홍종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

(2012. 8. 3 백재현 · 이찬열 · 최민희 · 박민수 · 배기운 · 전정희 · 김성주 · 김재운 · 유대운 · 박남춘 · 이미경 · 김경협 · 배재정 · 장병완 · 유인태 · 이석현 · 노웅래 · 김윤덕 · 임내현 · 김영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12. 8. 3 정희수 · 고희선 · 김정록 · 유승우 · 윤진식 · 이한성 · 전정희 · 한기호 · 박대출 · 김춘진 · 박인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

(2012. 8. 21 최민희 · 강동원 · 최동익 · 도종환 · 이에리사 · 이상민 · 유대운 · 신경민 · 김성주 · 민홍철 · 김윤덕 · 노웅래 · 배기운 · 김현미 · 홍종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 발의)

(2012. 8. 21 진성준 · 김윤덕 · 유은혜 · 김성주 · 이용섭 · 신경민 · 유대운 · 윤호중 · 전정희 · 전병헌 · 배기운 · 홍영표 · 최민희 · 강동원 · 이찬열 · 이낙연 · 박완주 · 장하나 · 우원식 · 오영식 · 김재운 · 김경협 · 김용익 · 유승희 · 김기식 · 박홍근 · 최규성 · 박남춘 · 이춘석 · 정세균 · 임내현 · 박지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

(2012. 8. 22 최민희 · 강동원 · 최동익 · 도종환 · 이상민 · 유대운 · 신경민 · 김성주 · 전정희 · 민홍철 · 김윤덕 · 노웅래 · 배기운 · 김현미 · 홍종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2012. 8. 24 김세연 · 유승우 · 박성호 · 서용교 · 황영철 · 현영희 · 서상기 · 김한표 · 이종훈 · 강은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2012. 8. 30 우상호 · 전정희 · 백재현 · 인재근 · 최민희 · 유대운 · 김윤덕 · 송호창 · 도종환 · 이상민 · 민홍철 · 배기운 · 정성호 · 김현미 · 홍종학 · 김관영 · 김춘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 발의)

(2012. 9. 3 박성호 · 김기선 · 강석훈 · 이한성 ·

정성호 · 박인숙 · 이완영 · 이노근 · 황진하 · 박민식 · 윤진식 · 민홍철 · 이강후 · 최봉홍 · 이에리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 발의)

(2012. 9. 4 우윤근 · 김용익 · 김영주 · 배재정 · 김우남 · 배기운 · 최동익 · 이춘석 · 이미경 · 김민기 · 강동원 · 최민희 · 정성호 · 김승남 · 김재운 · 김동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2012. 9. 4 진선미 · 장하나 · 정성호 · 이미경 · 배기운 · 홍종학 · 전병헌 · 문병호 · 김광진 · 김민기 · 신경민 · 유성엽 · 최민희 · 윤후덕 · 강동원 · 전정희 · 김재운 · 은수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2012. 9. 5 진선미 · 장하나 · 이에리사 · 정성호 · 유인태 · 홍종학 · 문병호 · 김성주 · 김광진 · 김민기 · 신경민 · 유성엽 · 윤후덕 · 강동원 · 전정희 · 김재운 · 민홍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 발의)

(2012. 9. 5 장병완 · 전병헌 · 노웅래 · 조정식 · 배재정 · 양승조 · 강기정 · 김영주 · 김동철 · 유인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7 김성곤 · 심재권 · 이에리사 · 유대운 · 배기운 · 최원식 · 민홍철 · 정성호 · 김승남 · 박민수 · 강동원 · 김장실 · 안홍준 · 주승용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7 강기정 · 박완주 · 신장용 · 백재현 · 박홍근 · 김우남 · 김춘진 · 김동철 · 이원욱 · 배기운 · 김태년 · 김영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2. 9. 21 이찬열 · 박남춘 · 황주홍 · 김윤덕 · 홍익표 · 김성주 · 홍의락 · 진성준 · 조정식 · 유승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 발의)

(2012. 9. 24 이윤석 · 이찬열 · 박혜자 · 민홍철 ·



김현 · 신장용 · 이미경 · 배기운 · 부좌현 · 박기춘 · 홍영표 · 강동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 발의)

(2012. 9. 25 장하나 · 김현미 · 윤후덕 · 신경민 · 박수현 · 유은혜 · 진선미 · 우원식 · 이목희 · 도종환 · 한명숙 · 윤관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10 김성곤 · 안민석 · 이원욱 · 문병호 · 유대운 · 배기운 · 심재권 · 조정식 · 신경민 · 최원식 · 정성호 · 황주홍 · 홍종학 · 전정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15 김성곤 · 배재정 · 임수경 · 유대운 · 김경협 · 문병호 · 유은혜 · 배기운 · 전정희 · 우윤근 · 박민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2 정진후 · 김제남 · 박홍근 · 박원석 · 유성엽 · 심상정 · 서기호 · 노회찬 · 강동원 · 이목희 · 홍영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6 박영선 · 우윤근 · 김현미 · 정청래 · 신기남 · 전해철 · 서영교 · 김성주 · 최규성 · 이춘석 · 유은혜 · 김광진 · 신장용 · 박홍근 · 배기운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희선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6 고희선 · 김한표 · 신의진 · 윤명희 · 정희수 · 유승우 · 이재영 · 김희국 · 이재오 · 전하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9 이상규 · 김선동 · 오병윤 · 이석기 · 김미희 · 정진후 · 김제남 · 김재연 · 이석현 · 金永柱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30 이상규 · 노회찬 · 김제남 · 김선동 · 김미희 · 김재연 · 오병윤 · 이석기 · 박원석 · 정진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30 장하나 · 조정식 · 한정애 · 배재정 · 임수경 · 박홍근 · 배기운 · 신경민 · 윤관석 · 김한길 · 김광진 · 서영교 · 김제남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8 진선미 · 윤후덕 · 金永柱 · 신경민 · 유대운 · 김민기 · 문희상 · 한정애 · 우원식 · 홍종학 · 강기정 · 남인순 · 인재근 · 유성엽 · 김영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13 이연주 · 박범계 · 오세세 · 이윤석 · 박병석 · 서영교 · 홍의락 · 박수현 · 박지원 · 김상희 · 박기춘 · 윤관석 · 주승용 · 문희상 · 최동익 · 박홍근 · 남인순 · 김용익 · 이학영 · 김영환 · 설훈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14 정희수 · 김성찬 · 송영근 · 한기호 · 이종진 · 심학봉 · 윤명희 · 이한성 · 류지영 · 강은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16 조원진 · 김재원 · 김기현 · 주호영 · 강은희 · 이학재 · 정희수 · 권은희 · 김상훈 · 황영철 · 이철우 · 박대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 발의)

(2012. 12. 7 황영철 · 이강후 · 권은희 · 이철우 · 강석호 · 한기호 · 나성린 · 경대수 · 신성범 · 박성효 · 여상규 · 강기윤 · 윤재옥 · 정갑윤 · 김기현 · 박대출 · 송영근 · 조원진 · 김광립 · 김세연 · 박덕흠 · 김진태 · 박대동 · 서용교 · 고희선 · 김영우 · 홍일표 · 정우택 · 김태흠 · 金永柱 · 장윤석 · 이에리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

(2012. 12. 7 강기윤 · 이만우 · 이종훈 · 김태원 · 신성범 · 권성동 · 이노근 · 김정록 · 김기선 · 박성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 발의)

(2012. 12. 10 윤재옥 · 이현재 · 이만우 · 김동완 · 고희선 · 전해철 · 정희수 · 박인숙 · 홍문표 ·

유승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 발의)**

(2012. 12. 31 이언주 · 이상민 · 박홍근 · 박완주 · 김영환 · 최동익 · 우윤근 · 설훈 · 홍종학 · 최재성 · 김승남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

(2013. 1. 15 박영선 · 우원식 · 홍종학 · 전해철 · 서영교 · 이석현 · 최원식 · 서기호 · 김현미 · 이인영 · 이춘석 · 박남춘 · 노용래 · 김기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 발의)**

(2013. 1. 25 이완영 · 강기윤 · 이우현 · 이노근 · 강길부 · 서용교 · 김성태 · 주영순 · 최봉홍 · 이종훈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

(2013. 2. 6 강기정 · 배기운 · 임수경 · 조정식 · 한명숙 · 백재현 · 양승조 · 홍종학 · 안민석 · 김춘진 · 전해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 발의)**

(2013. 2. 6 부좌현 · 홍의락 · 서병수 · 조정식 · 최원식 · 전정희 · 윤관석 · 우원식 · 이원욱 · 한명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13. 2. 7 김재윤 · 배기운 · 김우남 · 남인순 · 정성호 · 윤관석 · 홍종학 · 신장용 · 박남춘 · 장하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 발의)**

(2013. 2. 15 김한표 · 정갑윤 · 이노근 · 문대성 · 민병주 · 이강후 · 하태경 · 김동완 · 최봉홍 · 윤명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金永柱 의원 대표 발의)**

(2013. 2. 18 金永柱 · 김기선 · 정갑윤 · 나성린 · 권은희 · 권성동 · 홍지만 · 최봉홍 · 김세연 · 윤관석 · 문정림 · 강기윤 · 홍문표 · 문대성 · 박인숙 · 정몽준 · 강은희 · 류지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

(2013. 2. 27 윤후덕 · 이찬열 · 최원식 · 배기운 ·

문병호 · 이윤석 · 김승남 · 윤호중 · 민홍철 · 이해찬 · 김광진 · 강동원 · 남인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

(2013. 3. 4 최민희 · 윤관석 · 김현미 · 배기운 · 김재윤 · 노용래 · 박인숙 · 윤호중 · 민홍철 · 심재권 · 전순옥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

(2013. 3. 5 최민희 · 김광진 · 윤관석 · 배기운 · 민홍철 · 문병호 · 홍종학 · 전해철 · 이상민 · 정성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13. 3. 8 정희수 · 박성호 · 이만우 · 함진규 · 정문헌 · 권은희 · 정성호 · 이한성 · 이명수 · 조원진 · 박인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2013. 3. 14 서영교 · 배기운 · 이미경 · 유대운 · 김세연 · 박홍근 · 박남춘 · 최원식 · 박범계 · 강동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2013. 3. 19 진선미 · 배재정 · 한정애 · 김광진 · 서기호 · 문정림 · 전순옥 · 이낙연 · 조정식 · 이해찬 · 남인순 · 전정희 · 전해철 · 서영교 · 유은혜 · 강동원 · 홍종학 · 김재윤 · 이에리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 발의)**

(2013. 3. 22 임수경 · 배기운 · 김춘진 · 민홍철 · 전순옥 · 남인순 · 이찬열 · 배재정 · 김관영 · 강기정 · 박홍근 · 안규백 · 윤관석 · 유기홍 · 유은혜 · 신경민 · 최규성 · 김태년 · 한정애 · 박남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 발의)**

(2013. 3. 25 임수경 · 배기운 · 김춘진 · 민홍철 · 전순옥 · 남인순 · 이찬열 · 배재정 · 김관영 · 강기정 · 박홍근 · 안규백 · 윤관석 · 유기홍 · 김태년 · 유은혜 · 신경민 · 최규성 · 한정애 · 박남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 발의)**

(2013. 4. 4 김광진·배기운·이학영·이미경·최민희·박홍근·윤관석·김재연·박민수·이춘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 발의)

(2013. 4. 5 김성곤·배기운·박민수·전순옥·신장용·심재권·윤관석·이한성·이윤석·남인순·박혜자·최민희·강창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 발의)

(2013. 4. 11 임수경·배기운·김춘진·민홍철·전순옥·남인순·이찬열·배재정·김관영·강기정·박홍근·안규백·윤관석·유기홍·김태년·유은혜·신경민·최규성·한정애·박남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2013. 4. 12 한정애·은수미·김재윤·김경협·임수경·장하나·홍영표·정진후·김제남·서기호·김기준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13. 4. 18 정희수·이만우·이한성·송영근·심재철·이명수·박성효·한기호·김한표·조명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 발의)

(2013. 4. 23 박주선·우윤근·김승남·이상직·안규백·장병완·박홍근·윤관석·김동철·추미애·최원식·홍익표·이연주·조정식·임내현·양승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 발의)

(2013. 4. 30 정문헌·유승우·김재원·이한성·김영우·이에리사·김기선·황영철·이자스민·김세연·길정우·이이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

(2013. 5. 6 김민기·윤후덕·전병헌·윤관석·정청래·부좌현·이찬열·최원식·김승남·김성곤·전순옥·문병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 의원 대표 발의)

(2013. 5. 8 이운룡·홍지만·이만우·손인춘·서상기·김장실·이자스민·윤명희·민병주·

김세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

(2013. 5. 9 최민희·민홍철·이춘석·윤관석·부좌현·배기운·오병윤·조정식·이미경·유은혜·이상민·김성곤·박남춘·심재권·남인순·최재성·전해철·김재윤·문병호·홍종학·김기준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 발의)

(2013. 5. 10 원혜영·김성곤·배기운·전병헌·문병호·민홍철·이미경·백재현·인재근·김윤덕·유기홍·조정식·강동원·정청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 발의)

(2013. 5. 14 김제남·강동원·심상정·우윤근·정진후·전순옥·전정희·서기호·남인순·박원석·김성곤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3. 5. 14 이명수·이장우·이이재·김태흠·이종진·함진규·윤진식·김태원·이재영·강석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 발의)

(2013. 5. 16 김성곤·한명숙·이낙연·최동익·박주선·문병호·이상규·김춘진·배기운·이상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 발의)

(2013. 5. 22 김재원·정몽준·이인제·김무성·남경필·정의화·이주영·송광호·김재경·고희선·강석호·김광림·이철우·유재중·김세연·홍일표·권성동·김용태·경대수·김동완·이이재·이우현·金永柱·현영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 발의)

(2013. 5. 28 강기운·이만우·심학봉·박인숙·김태원·김기선·유승우·박성호·정갑윤·이에리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 발의)

(2013. 5. 29 강동원·김우남·심상정·김제남·

윤관석 · 최동익 · 김광진 · 배기운 · 김성곤 ·  
유성엽 · 정진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 발의)

(2013. 5. 30 문병호 · 김기준 · 김현미 · 민홍철 ·  
우원식 · 윤관석 · 이상민 · 이윤석 · 이종걸 ·  
홍종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 의원 대표 발의)

(2013. 6. 13 김동완 · 정희수 · 박인숙 · 이철우 ·  
李宰榮 · 김종훈 · 민현주 · 이종훈 · 이이재 ·  
박성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 발의)

(2013. 6. 26 김제남 · 서기호 · 은수미 · 심상정 ·  
강동원 · 박원석 · 전순옥 · 정진후 · 부좌현 ·  
우윤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 발의)

(2013. 6. 26 김을동 · 문정림 · 손인춘 · 한정애 ·  
박인숙 · 민병주 · 류지영 · 은수미 · 유승희 ·  
김상희 · 김현숙 · 민현주 · 김태호 · 유일호 ·  
윤명희 · 이종훈 · 서상기 · 현영희 · 권은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 발의)

(2013. 6. 27 서용교 · 김무성 · 손인춘 · 유승우 ·  
문정림 · 유재중 · 이만우 · 이현재 · 이채익 ·  
신장용 · 이한성 · 류지영 · 주영순 · 한선교 ·  
최봉홍 · 이철우 · 강석훈 · 김재경 · 이완영 ·  
박민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

(2013. 6. 27 이원욱 · 부좌현 · 전순옥 · 한정애 ·  
박홍근 · 박완주 · 노웅래 · 최민희 · 홍종학 ·  
김기준 · 이학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3. 6. 27 박인숙 · 정희수 · 현영희 · 김종태 ·  
유승민 · 이에리사 · 김세연 · 박성호 · 민병주 ·  
염동열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 발의)

(2013. 6. 28 최재성 · 김성곤 · 김용익 · 김현미 ·  
유은혜 · 이낙연 · 이상직 · 이해찬 · 정성호 ·

조정식 · 장하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

(2013. 7. 2 박완주 · 이목희 · 전순옥 · 부좌현 ·  
진성준 · 박홍근 · 노영민 · 이인영 · 양승조 ·  
이원욱 · 인재근 · 이학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 발의)

(2013. 7. 3 유대운 · 이찬열 · 윤관석 · 윤후덕 ·  
이상민 · 신경민 · 최원식 · 윤호중 · 박남춘 ·  
박영선 · 민홍철 · 남인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2013. 7. 9 박기춘 · 윤관석 · 박수현 · 이석현 ·  
김민기 · 이윤석 · 김성곤 · 박지원 · 정세균 ·  
김관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

(2013. 7. 18 강기윤 · 유승우 · 이만우 · 이한성 ·  
박인숙 · 김성찬 · 김태원 · 박성호 · 김기선 ·  
신성범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 발의)

(2013. 7. 19 김현 · 서영교 · 김윤덕 · 전순옥 ·  
김관영 · 전정희 · 이춘석 · 김태년 · 박주선 ·  
이종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3. 8. 9 유승희 · 한정애 · 박혜자 · 최동익 ·  
최원식 · 서영교 · 임수경 · 장하나 · 전순옥 ·  
이미경 · 김현 · 설훈 · 김용익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 발의)

(2013. 8. 20 김광진 · 배기운 · 유성엽 · 김우남 ·  
우원식 · 김승남 · 윤호중 · 김기준 · 김재연 ·  
민홍철 · 유은혜 · 진성준 · 송호창 · 정호준 ·  
추미애 · 박남춘 · 박홍근 · 박민수 · 장하나 ·  
최동익 · 우윤근 · 윤후덕 · 전순옥 · 남인순 ·  
김태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 발의)

(2013. 9. 2 이한성 · 김재원 · 유승우 · 정수성 ·  
이강후 · 안홍준 · 류지영 · 송영근 · 김정록 ·  
문정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

발의)

(2013. 9. 10 윤상현 · 김종태 · 김진태 · 김학욱 · 김한표 · 김희정 · 류지영 · 문정림 · 신동우 · 이우현 · 이채익 · 조해진 · 홍지만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 발의)

(2013. 9. 13 김진태 · 이우현 · 신동우 · 강은희 · 이현승 · 홍지만 · 김태흠 · 류지영 · 이채익 · 김한표 · 윤상현 · 문정림 · 이완영 · 윤재옥 · 김기선 · 권성동 · 한기호 · 김성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

(2013. 9. 23 신경민 · 김용익 · 최민희 · 김재윤 · 추미애 · 인재근 · 전순옥 · 노웅래 · 남인순 · 변재일 · 강창일 · 정호준 · 김현미 · 전해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3. 9. 24 남인순 · 김상희 · 전순옥 · 유은혜 · 박원석 · 김현미 · 김제남 · 장하나 · 이학영 · 박혜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2013. 9. 25 윤관석 · 진성준 · 안규백 · 이상직 · 최민희 · 오영식 · 유승희 · 윤호중 · 전정희 · 박수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 발의)

(2013. 9. 30 최원식 · 이춘석 · 최재천 · 박범계 · 은수미 · 이찬열 · 윤후덕 · 김경협 · 김현미 · 유성엽 · 서영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 발의)

(2013. 10. 14 박범계 · 박수현 · 박영선 · 신경민 · 유인태 · 이춘석 · 조정식 · 진성준 · 최원식 · 한명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6 강기윤 · 유승우 · 박성호 · 이한성 · 김성찬 · 김기선 · 문정림 · 박성호 · 김태원 · 권성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7 이상민 · 최원식 · 문병호 · 노영민 · 노웅래 · 김재윤 · 이원욱 · 최민희 · 양승조 ·

안민석 · 박수현 · 김기준 · 도종환 · 이종걸 · 박완주 · 강창일 · 박병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15 박성호 · 송광호 · 홍문표 · 박덕흠 · 이장우 · 이운룡 · 이완구 · 정우택 · 강기윤 · 성완중 · 이명수 · 민병주 · 이인제 · 노철래 · 손인춘 · 김을동 · 이노근 · 윤진식 · 김현숙 · 김동완 · 김태원 · 이에리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20 류성걸 · 박성호 · 유승우 · 유기준 · 이만우 · 김무성 · 이한성 · 주호영 · 김희국 · 성완중 · 강길부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21 유대운 · 박혜자 · 오영식 · 노영민 · 도종환 · 전해철 · 박남춘 · 김현 · 이춘석 · 박영선 · 김광진 · 진성준 · 홍영표 · 백재현 · 김재윤 · 김민기 · 이찬열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21 강기윤 · 김태원 · 문정림 · 박성호 · 이낙연 · 이노근 · 이만우 · 이한성 · 이주영 · 이자스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4 김광진 · 배기운 · 김기준 · 박홍근 · 안규백 · 김성곤 · 홍의락 · 김현미 · 정청래 · 박민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6 홍익표 · 남인순 · 박범계 · 백근기 · 윤후덕 · 은수미 · 인재근 · 정청래 · 진선미 · 진성준 · 최동익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6 강기윤 · 이한성 · 심재철 · 이만우 · 박성호 · 박성호 · 김태원 · 정갑윤 · 김성찬 · 권성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6 원혜영 · 김진표 · 민병두 · 전순옥 · 김영환 · 부좌현 · 배기운 · 김성곤 · 홍영표 · 정청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1 이재오·유인태·김용태·이낙연·이만우·이주영·심재권·전순옥·박민수·신성범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6 배재정·이원욱·이학영·한정애·박민수·김윤덕·김춘진·배기운·전순옥·문희상·김광진·은수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7 배재정·이원욱·정청래·이학영·한정애·박민수·안민석·김윤덕·김춘진·배기운·전순옥·문희상·김광진·은수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8 김세연·이주영·민현주·박인숙·송영근·정갑윤·서용교·민병주·이운룡·이이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23 심상정·장하나·강동원·김제남·정진후·서기호·박원석·남인순·박주선·김상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24 김선동·최규성·배기운·김미희·김승남·박민수·오병윤·김재연·이상규·이석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26 윤후덕·강동원·강석호·김광진·김기식·김기준·김동완·김무성·김미희·김상민·김선동·김영주·김영환·남인순·노영민·도종환·문재인·민홍철·배기운·백재현·부좌현·서용교·신장용·원혜영·유은혜·윤관석·윤명희·윤호중·은수미·이낙연·이상민·이상직·이석현·이주영·이찬열·이학영·이현재·임내현·장하나·전순옥·전해철·정호준·최원식·추미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26 김선동·최규성·배기운·박민수·오병윤·김재연·이상규·김미희·이석기·김광진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26 김윤덕·홍종학·김재운·박원석·최민희·진선미·이학영·이종걸·문병호·박영선·최재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30 김현숙·강은희·박인숙·윤명희·이주영·권은희·신의진·박성효·신동우·김무성·김종훈·홍일표·박민식·민병주·신경립·문정림·황인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 발의)**

(2014. 1. 2 이상규·장하나·김선동·김미희·김재연·이석현·이석기·오병윤·박주선·이만우·서영교·김재운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2014. 1. 3 김태원·이노근·김학용·이종진·최봉홍·서용교·이현재·김기선·전하진·김명연·박덕흠·김영우·송영근·박명재·경대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 발의)**

(2014. 1. 7 류지영·김정록·이에리사·신경립·이자스민·황인자·송영근·윤명희·김을동·문정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 발의)**

(2014. 1. 7 박남춘·배재정·배기운·임수경·김성곤·서용교·이목희·장하나·이찬열·박민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 발의)**

(2014. 1. 10 이우현·이노근·김학용·장윤석·성완중·홍문종·박창식·노철래·김을동·박대동·강기운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2014. 1. 13 심상정·장하나·강동원·김제남·정진후·서기호·박원석·남인순·박주선·김상희·이목희·홍종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 발의)**

(2014. 1. 17 이노근·김학용·이우현·장운석·윤후덕·김기선·김상훈·이채익·정문현·안종범·김진태·길정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 발의)**

(2014. 1. 21 최재성·최민희·윤호중·백재현·배기운·박범계·이원욱·한명숙·김현·전해철·원혜영·박홍근·유은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14. 1. 23 김학용·이우현·장운석·이노근·박대동·박성호·성완중·전하진·이강후·이현재·박덕흠·안덕수·주영순·박윤옥·윤영석·최봉홍·김태원·박성효·김상훈·권은희·홍문중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 발의)**

(2014. 1. 23 김광진·정호준·배기운·강동원·정진후·배재정·박홍근·이학영·서영교·장하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 발의)**

(2014. 1. 29 윤상현·강은희·김정록·김한표·류지영·박명재·신동우·안덕수·李宰榮·이현재·주영순·홍문표·홍지만·황진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4. 2. 4 유승희·진성준·유은혜·신계륜·이목희·최규성·설훈·홍의락·노영민·이찬열·문병호·최원식·김현·박남춘·오영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4. 2. 5 유승희·진성준·유은혜·신계륜·이목희·최규성·설훈·홍의락·노영민·이찬열·문병호·최원식·김현·박남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 발의)**

(2014. 2. 6 윤상현·강은희·김태흠·김한표·김희선·류지영·문정립·박대출·신동우·안덕수·윤재옥·이완영·이우현·이진복·

조명철·홍지만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

(2014. 2. 12 정청래·배기운·전순옥·이운석·박남춘·최민희·김광진·진선미·장하나·김민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2014. 2. 17 한정애·김광진·김성주·노용래·박수현·백재현·윤후덕·이운석·인재근·장하나·최재천·홍의락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 발의)**

(2014. 2. 24 박남춘·김영주·유대운·문재인·윤호중·인재근·최원식·우상호·신학용·이찬열·서영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 발의)**

(2014. 2. 28 이해찬·김현·변재일·박성효·이찬열·배기운·윤후덕·김민기·윤호중·박수현·최동익·배재정·진선미·김영주·유대운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 발의)**

(2014. 3. 6 윤재옥·정문현·박명재·황영철·안홍준·이주영·이한성·이철우·박창식·홍지만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 발의)**

(2014. 3. 7 김재윤·배기운·백재현·박주선·정진후·이자스민·김상희·김태년·정성호·박남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 발의)**

(2014. 3. 20 김경협·안민석·이찬열·서영교·박주선·우원식·김기준·김성곤·김광진·배재정·한정애·이언주·최민희·신경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 발의)**

(2014. 3. 21 이언주·민홍철·김태년·전순옥·백재현·송호창·최동익·김경협·최원식·김재윤·이목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 발의)**

(2014. 3. 24 유대운·김성곤·배기운·노영민·황주홍·박민수·김재윤·신경민·박남춘·최원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 발의)

(2014. 3. 25 박범계·김춘진·최원식·박지원·신경민·이춘석·박영선·박수현·최재성·김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14. 3. 26 김학용·윤명희·김광림·이한성·서용교·류지영·박인숙·이만우·권성동·김종태·이에리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 발의)

(2014. 3. 28 김한표·김정록·이진복·윤영석·송영근·김기선·이명수·문대성·권성동·박인숙·경대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 발의)

(2014. 4. 7 최재성·부좌현·설훈·신경민·이상직·이원욱·이학영·전해철·홍영표·황주홍·강기정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2014. 4. 7 유성엽·배기운·전순옥·조경태·김광진·서기호·김성곤·황주홍·부좌현·박남춘·이상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 발의)

(2014. 4. 10 김한표·정갑윤·김세연·권성동·김정록·문대성·윤명희·박명재·신동우·이채익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 발의)

(2014. 4. 15 박범계·김춘진·신경민·박수현·김영록·박영선·박병석·윤후덕·김현·최원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 발의)

(2014. 4. 23 강기운·이노근·김성찬·이에리사·김기선·박성호·김재원·이만우·이한성·김태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 발의)

(2014. 5. 9 서청원·노철래·이현재·박윤옥·이찬열·문대성·황인자·박명재·황영철·유승우·이우현·함진규·윤명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 발의)

(2014. 6. 12 박주선·정세균·정성호·김제남·황주홍·정진후·장병완·김동철·김영록·신기남·강기정·정청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 발의)

(2014. 6. 13 황인자·정희수·손인춘·이완영·이명수·김태원·박윤옥·이만우·황영철·이현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4. 6. 13 이찬열·백재현·문희상·박남춘·진선미·김민기·최원식·조경태·이종걸·황주홍·이원욱·신학용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 발의)

(2014. 6. 16 황인자·정희수·손인춘·이완영·이명수·김태원·박윤옥·이만우·황영철·이현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 발의)

(2014. 6. 17 민병주·권은희·김동완·김무성·김을동·류지영·박대출·박윤옥·서청원·신경림·윤명희·이명수·이우현·이에리사·이한성·이현승·정문헌·조해진·함진규·홍문중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 발의)

(2014. 6. 23 김성곤·이언주·이찬열·김영환·추미애·서영교·윤후덕·민홍철·문희상·우상호·인재근·노영민·심재권·부좌현·김경협·백재현·오영식·정성호·신학용·강창일·정청래·홍의락·김춘진·김동철·이미경·강동원·박민수·김기준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 발의)

(2014. 6. 23 박병석·박남춘·양승조·김성주·안규백·김태년·이찬열·이상민·문병호·박범계·김상희·김성곤·부좌현·남인순·노응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 발의)



발의)

(2014. 6. 24 윤영석 · 이채익 · 김정록 · 김한표 · 정우택 · 정수성 · 홍일표 · 이강후 · 이현재 · 홍지만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 발의)

(2014. 6. 26 이상일 · 박창식 · 이한성 · 윤재옥 · 김태원 · 최봉홍 · 홍지만 · 정희수 · 민현주 · 문대성 · 홍문중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2014. 6. 30 진선미 · 부좌현 · 윤후덕 · 배재정 · 박원석 · 장하나 · 유인태 · 노영민 · 심상정 · 이상직 · 박홍근 · 김성곤 · 신경민 · 송호창 · 전해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 발의)

(2014. 7. 7 박명재 · 이노근 · 이채익 · 이우현 · 정두언 · 강석호 · 김상훈 · 강길부 · 유승민 · 윤재옥 · 이강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14. 7. 8 안규백 · 원혜영 · 김승남 · 임수경 · 윤후덕 · 진성준 · 박주선 · 이상직 · 유승민 · 김성곤 · 황주홍 · 박남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4. 7. 14 이찬열 · 강창일 · 박남춘 · 김민기 · 문희상 · 최원식 · 이종걸 · 주승용 · 조정태 · 황주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 발의)

(2014. 7. 14 이목희 · 임수경 · 김용익 · 양승조 · 최동익 · 윤관석 · 최규성 · 홍영표 · 한정애 · 김성주 · 한명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 발의)

(2014. 7. 15 김한표 · 정희수 · 권성동 · 김도읍 · 윤재옥 · 김기선 · 송영근 · 문대성 · 이만우 · 김명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 발의)

(2014. 7. 25 강은희 · 박명재 · 이완영 · 김기선 · 김종태 · 이에리사 · 김진태 · 정수성 · 김상훈 · 이진복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

발의)

(2014. 7. 28 황영철 · 한기호 · 하태경 · 김기선 · 이자스민 · 이이재 · 송영근 · 양창영 · 김진태 · 이완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 발의)

(2014. 8. 19 전정희 · 임수경 · 이상직 · 남인순 · 최규성 · 박주선 · 김윤덕 · 전순옥 · 김경협 · 윤후덕 · 부좌현 · 이미경 · 조정식 · 추미애 · 오영식 · 김성곤 · 김관영 · 이석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

(2014. 8. 29 이채익 · 이현재 · 이만우 · 윤영석 · 조정태 · 서용교 · 김태호 · 신성범 · 권성동 · 문대성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

(2014. 9. 2 하태경 · 김광림 · 김동완 · 김무성 · 김한표 · 박덕흠 · 박인숙 · 서상기 · 이우현 · 여상규 · 최봉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4. 9. 22 김춘진 · 홍문표 · 김영록 · 강기정 · 김경협 · 윤호중 · 최재성 · 이원욱 · 박민수 · 박범계 · 김윤덕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4. 9. 23 정청래 · 박남춘 · 박민수 · 배재정 · 이춘석 · 김광진 · 김민기 · 진성준 · 백재현 · 전순옥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4. 9. 23 김광진 · 김경협 · 박남춘 · 박민수 · 박홍근 · 부좌현 · 서용교 · 안민석 · 최동익 · 최민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4. 9. 23 노웅래 · 김우남 · 황주홍 · 이상직 · 강창일 · 전순옥 · 주승용 · 김성곤 · 임수경 · 박윤옥 · 이목희 · 박광온 · 박남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4. 9. 23 정갑윤 · 김동완 · 박수현 · 이노근 · 김성찬 · 문정림 · 이현재 · 박덕흠 · 이인제 · 양승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4. 10. 1 김세연 · 유승민 · 문대성 · 정문헌 · 이재영 · 박인숙 · 이자스민 · 민현주 · 황영철 · 하태경 · 강은희 · 유의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0. 15 박수현 · 김승남 · 박남춘 · 강창일 · 윤후덕 · 임수경 · 김성주 · 박홍근 · 이개호 · 배재정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4 노웅래 · 유은혜 · 황주홍 · 박남춘 · 박민수 · 김성곤 · 김민기 · 이찬열 · 김승남 · 강창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0 윤상현 · 김상민 · 김성찬 · 김용태 · 김종태 · 문정림 · 안덕수 · 윤명희 · 이완영 · 이이재 · 이한성 · 이현재 · 홍철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신경민 · 안민석 · 심재권 · 김현미 · 홍종학 · 오제세 · 최민희 · 박광운 · 김성곤 · 이찬열 · 이종걸 · 부좌현 · 배재정 · 이개호 · 한명숙 · 최동익 · 서기호 · 추미애 · 도종환 · 유기홍 · 박민수 · 박남춘 · 인재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김용익 · 양승조 · 박수현 · 김기식 · 최동익 · 이학영 · 박민수 · 이미경 · 장병완 · 강기정 · 윤호중 · 김상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신경민 · 한명숙 · 도종환 · 심재권 · 김현미 · 박광운 · 김성곤 · 이찬열 · 이종걸 · 김광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박남춘 · 임수경 · 최민희 · 인재근 · 김성곤 · 주승용 · 김현 · 김제남 · 정청래 · 노웅래 · 박민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정청래 · 진선미 · 김광진 · 김현 · 김민기 · 부좌현 · 정성호 · 박남춘 · 주승용 · 강창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4 황주홍 · 김영환 · 문병호 · 신학용 · 유성엽 · 주승용 · 김성곤 · 이종걸 · 이원욱 · 백재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박남춘 · 임수경 · 최민희 · 인재근 · 김성곤 · 주승용 · 김현 · 김제남 · 유대운 · 노웅래 · 박민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진선미 · 한명숙 · 유은혜 · 이목희 · 정성호 · 이개호 · 주승용 · 이학영 · 부좌현 · 박남춘 · 최민희 · 임수경 · 김기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 진선미 · 한명숙 · 유은혜 · 이목희 · 정성호 · 이개호 · 주승용 · 이학영 · 최민희 · 부좌현 · 박남춘 · 임수경 · 김기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2014. 12. 8 임수경 · 김현미 · 강동원 · 윤관석 · 진선미 · 홍의락 · 전순옥 · 배재정 · 최원식 · 홍익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2. 9 원혜영 · 홍종학 · 진선미 · 신정훈 · 전정희 · 민병두 · 김승남 · 김기식 · 김윤덕 · 유은혜 · 남인순 · 이학영 · 우상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4. 12. 9 정청래 · 부좌현 · 박주선 · 정성호 · 최민희 · 박민수 · 김영록 · 김광진 · 박남춘 · 진선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2. 9 윤명희 · 박윤옥 · 신경림 · 조명철 · 이한성 · 이만우 · 이노근 · 황인자 · 김장실 · 이에리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1 하태경 · 김정록 · 박윤옥 · 강석호 · 민현주 · 정희수 · 민병주 · 김상훈 · 손인춘 · 전하진 · 이종훈 · 김명연 · 나성린 · 정용기 · 박인숙 · 권은희 · 이강후 · 김동완 · 이종진 · 황영철 · 송영근 · 경대수 · 이한구 · 박맹우 · 김학용 · 최봉홍 · 이에리사 · 김을동 · 김종훈 · 이병석 · 김기선 · 서상기 · 서용교 · 이채익 · 이학재 · 이인제 · 신동우 · 윤상현 · 강창희 · 조원진 · 이정현 · 박명재 · 박덕흠 · 김세연 · 김영우 · 이상일 · 홍지만 · 김현숙 · 문대성 · 강은희 · 이운룡 · 정병국 · 심운조 · 김희선 · 류성걸 · 조현룡 · 여상규 · 김정훈 · 이우현 · 정미경 · 유의동 · 김태환 · 안홍준 · 김한표 · 강길부 · 이균현 · 원유철 · 김광립 · 이현승 · 유일호 · 이만우 · 김용태 · 심재철 · 이이재 · 강석훈 · 유승민 · 정수성 · 권성동 · 박대출 · 김성태 · 이노근 · 길정우 · 김성찬 · 장윤석 · 류지영 · 박성호 · 주호영 · 홍철호 · 김태호 · 박민식 · 문정림 · 윤명희 · 주영순 · 함진규 · 김종태 · 유재중 · 이현재 · 이재영 · 김태원 · 홍일표 · 정두언 · 홍문종 · 이한성 · 황진하 · 조해진 · 박창식 · 서청원 · 이종배 · 박대동 · 신경림 · 이주영 · 김제식 · 노철래 · 황인자 · 조명철 · 나경원 · 심학봉 · 이진복 · 안덕수 ·

김재원 · 김태흠 · 안효대 · 이완구 · 김무성 ·  
 이자스민 · 이완영 · 김재경 · 김희정 · 홍문표 ·  
 이철우 · 송광호 · 정우택 · 최경환 · 이장우 ·  
 김상민 · 김장실 · 염동열 · 신의진 · 김용남 ·  
 강기윤 · 윤재옥 · 정문헌 · 김희국 · 정갑윤 ·  
 이명수 · 김도읍 · 양창영 · 한선교 · 배덕광 ·  
 진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1 황영철 · 김정록 · 박윤옥 · 강석호 ·  
 민현주 · 정희수 · 민병주 · 김상훈 · 전하진 ·  
 손인춘 · 이종훈 · 김명연 · 나성린 · 정용기 ·  
 박인숙 · 권은희 · 이강후 · 김동완 · 이종진 ·  
 송영근 · 경대수 · 이한구 · 박맹우 · 김학용 ·  
 최봉홍 · 이에리사 · 김을동 · 김종훈 · 이병석 ·  
 김기선 · 서상기 · 서용교 · 이채익 · 이학재 ·  
 이인제 · 신동우 · 윤상현 · 강창희 · 조원진 ·  
 이정현 · 박명재 · 박덕흠 · 김세연 · 김영우 ·  
 이상일 · 홍지만 · 김현숙 · 문대성 · 강은희 ·  
 이운룡 · 정병국 · 김희선 · 류성걸 · 심윤조 ·  
 조현룡 · 여상규 · 김정훈 · 이우현 · 정미경 ·  
 유의동 · 김태환 · 안홍준 · 김한표 · 이군현 ·  
 강길부 · 원유철 · 이현승 · 김광립 · 이만우 ·  
 유일호 · 김용태 · 심재철 · 이이재 · 강석훈 ·  
 유승민 · 정수성 · 권성동 · 박대출 · 김성태 ·  
 이노근 · 길정우 · 김성찬 · 장윤석 · 류지영 ·  
 박성호 · 주호영 · 홍철호 · 김태호 · 박민식 ·  
 문정림 · 윤명희 · 함진규 · 주영순 · 김종태 ·  
 유재중 · 이현재 · 이재영 · 김태원 · 홍일표 ·  
 정두언 · 홍문종 · 이한성 · 황진하 · 조혜진 ·  
 박창식 · 서청원 · 이종배 · 박대동 · 신경림 ·  
 하태경 · 이주영 · 김제식 · 노철래 · 황인자 ·  
 조명철 · 나경원 · 심학봉 · 이진복 · 안덕수 ·  
 김재원 · 김태흠 · 안효대 · 이완구 · 김무성 ·  
 신성범 · 이자스민 · 이완영 · 김재경 · 한기호 ·  
 김희정 · 홍문표 · 이철우 · 송광호 · 정우택 ·  
 최경환 · 이장우 · 김상민 · 김장실 · 염동열 ·  
 신의진 · 윤영석 · 김용남 · 강기윤 · 윤재옥 ·  
 정문헌 · 김희국 · 정갑윤 · 이명수 · 김도읍 ·  
 양창영 · 한선교 · 배덕광 · 진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5 이강후 · 나경원 · 심학봉 · 홍지만 ·  
 이노근 · 박명재 · 이우현 · 정두언 · 서청원 ·  
 이현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7 김승남 · 원혜영 · 김윤덕 · 백재현 ·

부좌현 · 진선미 · 김기식 · 최민희 · 김광진 ·  
 전정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8 한선교 · 심윤조 · 김을동 · 홍지만 ·  
 정병국 · 서상기 · 안홍준 · 박대출 · 서용교 ·  
 이군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8 진선미 · 김현미 · 남인순 · 박남춘 ·  
 박원석 · 정성호 · 정청래 · 유승희 · 원혜영 ·  
 이개호 · 이찬열 · 최동익 · 최민희 · 한정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4. 12. 29 강동원 · 신정훈 · 임수경 · 이학영 ·  
 김승남 · 박수현 · 정진후 · 윤후덕 · 유대운 ·  
 이원욱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5. 1. 19 이노근 · 박명재 · 이종진 · 최봉홍 ·  
 양창영 · 황인자 · 송영근 · 이만우 · 박성호 ·  
 이우현 · 함진규 · 윤명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5. 1. 19 장윤석 · 황영철 · 강석훈 · 정갑윤 ·  
 황진하 · 윤명희 · 박덕흠 · 유승우 · 이윤석 ·  
 이에리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5. 3. 2 황영철 · 정문헌 · 염동열 · 김승남 ·  
 강동원 · 박덕흠 · 한기호 · 장윤석 · 이윤석 ·  
 이철우 · 김춘진 · 이한성 · 김종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5. 3. 3 김상희 · 이개호 · 민홍철 · 양승조 ·  
 박남춘 · 김성곤 · 오영식 · 김윤덕 · 이미경 ·  
 최동익 · 노웅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

(2015. 3. 10 유대운 · 이상직 · 박남춘 · 오영식 ·  
 송호창 · 이개호 · 정청래 · 임수경 · 김광진 ·  
 문희상 · 정호준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5. 3. 10 황주홍 · 김승남 · 한기호 · 장윤석 ·  
 김춘진 · 박민수 · 김성곤 · 홍영표 · 최동익 ·  
 이찬열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5. 3. 10 민병두 · 김성곤 · 박홍근 · 이상직 ·  
 김기준 · 조정식 · 김상희 · 민홍철 · 인재근 ·  
 김관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5. 3. 10 조원진 · 이한성 · 권은희 · 정수성 ·

정용기 · 박명재 · 서상기 · 신성범 · 박인숙 · 안홍준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5. 3. 13 박남춘 · 윤관석 · 안민석 · 이개호 · 김성곤 · 김현 · 민홍철 · 홍영표 · 배재정 · 백재현 · 서영교 · 인재근 · 박민수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 발의)**

(2012. 6. 26 이노근 · 이우현 · 정우택 · 이한구 · 권성동 · 노철래 · 홍문중 · 김장실 · 이에리사 · 주영순 · 안덕수 · 신동우 · 권은희 · 이한성 · 김기선 · 윤진식 · 윤영석 · 현영희 · 김근태 · 이현재 · 주호영 · 심윤조 · 유승우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 발의)**

(2012. 8. 17 김영우 · 정우택 · 유기준 · 이한구 · 김용태 · 심재철 · 황영철 · 조원진 · 홍일표 · 서병수 · 서용교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7 강기정 · 박완주 · 신장용 · 백재현 · 박홍근 · 김우남 · 김춘진 · 김동철 · 이원욱 · 배기운 · 김태년 · 김영주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 발의)**

(2012. 9. 27 서병수 · 이현재 · 하태경 · 박인숙 · 정갑윤 · 김정록 · 김태원 · 김을동 · 정수성 · 이현승 · 박민식 · 유기준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10 김성곤 · 안민석 · 이원욱 · 문병호 · 유대운 · 배기운 · 심재권 · 조정식 · 신경민 · 최원식 · 정성호 · 황주홍 · 홍종학 · 전정희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5 정진후 · 심상정 · 노회찬 · 박원석 · 서기호 · 강동원 · 김제남 · 장하나 · 안민석 · 김용익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 발의)**

(2013. 1. 30 유승우 · 황영철 · 강기운 · 이자스민 · 홍문표 · 김상훈 · 정갑윤 · 여상규 · 박성호 · 김을동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

(2013. 2. 14 강기정 · 조정식 · 배기운 · 오병윤 · 김영주 · 최재성 · 신장용 · 홍영표 · 김승남 · 은수미 · 문병호 · 박지원 · 원혜영 · 윤호중 · 이인영 · 김현 · 이연주 · 김기준 · 우상호 · 김태흠 · 이상직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

(2013. 3. 14 강기정 · 한명숙 · 배기운 · 김현미 · 이학영 · 이원욱 · 조정식 · 김현 · 김태년 · 전해철 의원 발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 발의)**

(2013. 4. 29 김성곤 · 유성엽 · 유승희 · 배기운 · 이원욱 · 전병헌 · 원혜영 · 홍종학 · 전정희 · 문병호 · 최민희 · 조정식 · 이해찬 · 강창일 · 민홍철 · 김광진 · 심재권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3. 5. 7 이찬열 · 김경협 · 김관영 · 전병헌 · 박주선 · 윤후덕 · 송광호 · 신장용 · 배기운 · 홍종학 · 최원식 · 유승희 · 강창일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 발의)**

(2013. 7. 5 김광림 · 심윤조 · 김태환 · 강기운 · 박성호 · 김장실 · 이노근 · 장윤석 · 이진복 · 김종태 · 이주영 · 윤진식 · 김태호 · 민병주 · 김현숙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 발의)**

(2013. 8. 16 유승우 · 이이재 · 이만우 · 이재오 · 이채익 · 강기운 · 박남춘 · 정희수 · 박덕흠 · 윤재옥 · 김세연 · 정수성 · 황주홍 · 한선교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 발의)**

(2013. 9. 23 정갑윤 · 송영근 · 홍지만 · 최봉홍 · 이운룡 · 김기선 · 한기호 · 정희수 · 박대출 · 문대성 · 전하진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5 박홍근 · 홍종학 · 강기정 · 이원욱 · 李宰榮 · 정호준 · 김광진 · 김상희 · 김성주 · 강창일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15 이목희·오제세·최동익·우원식·김성주·양승조·이언주·남인순·홍종학·인재근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李宰榮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18 李宰榮·이자스민·장하나·김재연·김광진·조해진·이현재·안효대·이강후·유승민·정희수·이만우·박홍근·심윤조·이이재·김세연·주영순·정호준·장윤석·박인숙·이주영·이장우·권은희·안종범·민현주·이종훈·류성걸·윤명희·조명철·김상민·남경필·김기선·손인춘·김현숙·이인제·金永柱·문정림·김영우·여상규·김명연·신경림·이재영·김광립·김진태·이에리사·민병주·박창식·김장실·신의진·원유철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25 최동익·배기운·원혜영·부좌현·이언주·강창일·남인순·박완주·김정록·한명숙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8 윤상현·강은희·권은희·김희선·문정림·서용교·손인춘·이노근·이우현·이현승·전하진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24 김선동·최규성·배기운·김영록·김승남·박민수·오병윤·김재연·이상규·김미희·이석기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26 김선동·최규성·배기운·김영록·김승남·박민수·오병윤·김재연·이상규·김미희·이석기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 발의)

(2014. 1. 24 이노근·안효대·이우현·장윤석·김학용·김진태·이명수·김기선·강기운·이현재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 발의)

(2014. 3. 6 황영철·윤재옥·김기선·윤명희·

김성태·이에리사·이만우·서상기·김진태·이운룡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2014. 3. 13 박기춘·박수현·김광진·손인춘·송광호·노용래·진성준·부좌현·배기운·박혜자·박홍근·장하나·박남춘·김경협·김태호·이언주·박민수·김세연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李宰榮 의원 대표발의)

(2014. 4. 21 李宰榮·김현숙·이한성·류지영·안홍준·신경림·장윤석·김무성·문대성·이자스민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2014. 6. 17 민병주·권은희·김동완·김무성·김을동·류지영·박대출·박윤옥·서청원·신경림·윤명희·이명수·이우현·이에리사·이한성·이현승·정문현·조해진·함진규·홍문중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4. 6. 27 윤명희·김정록·이노근·박인숙·조명철·이에리사·이만우·최봉홍·황인자·신경림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4. 9. 16 최민희·정진후·김미희·김재연·송호창·이학영·전해철·박남춘·이원욱·김윤덕·은수미·김제남·김용익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4. 9. 17 최민희·정진후·김미희·김재연·송호창·이학영·전해철·박남춘·이원욱·김윤덕·은수미·김용익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0 윤상현·김상민·김성찬·김용태·김종태·문정림·안덕수·윤명희·이완영·이이재·이한성·이현재·홍철호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김민기·이개호·이해찬·정청래·노용래·홍의락·임수경·이인영·진선미·김승남·홍종학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2. 26 주호영·홍철호·정병국·송영근·김제식·심학봉·이노근·이한성·서상기·홍지만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5. 3. 13 박남춘·윤관석·안민석·이개호·김현·민홍철·홍영표·배재정·백재현·

서영교·박민수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5. 3. 16 윤영석·안홍준·이채익·정수성·여상규·김도읍·유승우·양창영·김한표·박인숙·조원진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12. 8. 28 박기춘·노영민·배재정·한정에·이윤석·김관영·이석현·최원식·한명숙·김민기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

(2012. 9. 6 이상규·정진후·노회찬·김선동·오병윤·박원석·김제남·이석기·김재연·김미희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2. 9. 14 심재권·김윤덕·김태년·김형태·문병호·박인숙·박혜자·배기운·배재정·오제세·이상직·이재오·전병헌·전정희·진성준·최민희·홍종학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2012. 11. 5 정진후·심상정·노회찬·박원석·서기호·강동원·김제남·장하나·유은혜·안민석·김용익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13. 2. 14 강기정·조정식·배기운·오병윤·김영주·최재성·신장용·홍영표·김승남·은수미·문병호·박지원·원혜영·윤호중·이인영·김현·이언주·김기준·우상호·김태흠·이상직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3. 2. 28 이원욱·이언주·백재현·윤관석·우원식·이상직·김영록·문희상·문병호·김경협·유대운·인재근·최동익·노웅래·김용익·김승남·이상민·양승조·정호준·유은혜·김기식·박홍근·유승희·배재정·도종환·김기준·신학용·윤호중·박민수·홍의락·김영주·정성호·최재성·김재윤·최규성·이찬열·김윤덕·김진표·안규백·이인영·정청래·전순옥·김상희·오제세·진성준·박혜자·강창일·부좌현·우윤근·김광진·백군기·박범계·김현·원혜영·서영교·안민석·전해철·김한길·김현미·신경민·김춘진·이윤석·김관영·전정희·임내현·민병두·신기남·신장용·박수현·박완주·오영식·조경태·김민기·이우현·김동완·권은희·김한표·이강후·김형태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13. 3. 14 강기정·한명숙·배기운·김현미·이학영·이원욱·조정식·김현·김태년·전해철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3. 4. 5 김성곤·조정식·이윤석·최민희·신장용·배기운·최원식·이인영·도종환·주승용·이해찬·전순옥·이한성·전해철·강창일·윤관석·남인순·안홍준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3. 4. 19 강창일·김성곤·유성엽·배기운·홍종학·안민석·박홍근·주승용·이학영·최규성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이원욱·부좌현·전순옥·박홍근·전정희·노웅래·최민희·유성엽·최재천·김승남·홍종학·이학영·김기준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013. 7. 5 김광림·심윤조·김태환·강기운·박성호·김장실·이노근·장윤석·이진복·김종태·이주영·윤진식·김태호·민병주·김현숙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3. 8. 2 유승희·김관영·김현·노웅래·박남춘·박혜자·배기운·배재정·설훈·오제세·유성엽·이목희·추미애·한정에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발의)

(2013. 8. 9 백군기·정세균·신경민·김광진·진성준·한명숙·김춘진·이춘석·이석현·조정식·양승조·김윤덕·이상민·우윤근·배재정·유대운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3. 8. 20 이원욱·배기운·박홍근·김성주·이만우·우윤근·정진후·박수현·김성곤·추미애·유성엽·정호준·전순옥·정성호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3. 11. 7 이노근·이현재·이채익·조현룡·이종진·김태원·이이재·김기선·김진태·박덕흠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5 양승조·배기운·강기정·한명숙·오제세·박수현·이언주·장병완·남인순·

최동익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4. 1. 24 이노근·안효대·이우현·장윤석·  
김학용·김진태·이명수·김기선·강기윤·  
이현재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4. 2. 10 진선미·정진후·안철수·정성호·  
유은혜·전순옥·은수미·배재정·윤호중·  
김민기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4. 3. 6 황영철·윤재옥·김기선·윤명희·  
김성태·이에리사·이만우·서상기·김진태·  
이운룡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

(2014. 4. 3 서용교·이한성·박대출·정희수·  
김무성·정갑윤·류지영·이진복·이노근·  
이채익·이에리사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4. 8. 27 주승용·신정훈·이종걸·변재일·  
강창일·최규성·이윤석·김성곤·이춘석·  
우윤근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

(2014. 9. 29 이강후·박명재·이노근·유승민·  
심학봉·정두언·이우현·나경원·서상기·  
이자스민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4. 11. 3 황주홍·장하나·박민수·김춘진·  
이종걸·백재현·김영환·주승용·문병호·  
신학용·김승남·유성엽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

(2014. 12. 30 이강후·나경원·심학봉·홍지만·  
이노근·박명재·이우현·정두언·서청원·  
이현재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5. 2. 27 함진규·이현승·강기윤·전하진·  
이이재·박대출·경대수·안덕수·박창식·  
이장우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5. 2. 27 정희수·이자스민·김태환·이명수·  
손인춘·이운룡·김태원·이노근·송영근·  
이한성 의원 발의)

이상 288건 3월 24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5. 3. 24 노웅래·김민기·부좌현·민홍철·  
박남춘·이개호·김성곤·전병헌·김상희·

안규백·박민수 의원 발의)

3월 25일 회부됨